

제4차 ('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23. 8. 29.(화) 09:30 ~17:4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온라인(zoom)동시 생중계

<https://us06web.zoom.us/j/82111253597>



주최  법무부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23년 8월 29일(화) 09:30 ~ 17:4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세부 일정

Section 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09:00 ~ 09:30	(30분)	○ 참석자 등록
09:30 ~ 09:40	(10분)	○ 인사말씀 / 사회자 진행 안내
09:40 ~ 12:00	(140분)	○ 좌장 인사(5분), 발제 및 토론(120분), 질의응답(15분) ·좌장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발제 2 : 성상환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토론 : 노동분야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복지분야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 여성분야 /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장 : 아동분야 /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장애분야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KDF 사무국장 : 이주분야 /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북한인권 /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Section 2 자유권 분야		
13:30 ~ 15:30	(120분)	○ 좌장 인사(5분), 발제 및 토론(100분), 질의응답(15분) ·좌장 :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 1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ection 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15:50 ~ 17:30	(100분)	○ 좌장 인사(5분), 발제 및 토론(80분), 질의응답(15분) ·좌장 :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발제 1 :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토론 : 디지털시대 인권 /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 디지털시대 인권 /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법학박사 : 기업과 인권 / 김민우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 기업과 인권 /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7:30 ~ 17:40	(10분)	○ 회의 마무리 및 정리

CONTENTS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Section

0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발제 1

- 사회권 분야 평가 및 제언 ————— 1
| 이 주 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발제 2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분야'에
관한 발제문 ————— 25
| 성 상 환(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토론

- ① 노동분야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39
- ② 복지분야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 43
- ③ 여성분야 /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장 ————— 47
- ④ 아동분야 /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51
- ⑤ 장애분야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KDF 사무국장 ————— 59
- ⑥ 이주분야 /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69
- ⑦ 북한인권 /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 73

Section

02

자유권 분야

발제 1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자유권 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1
| 이 준 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발제 2

- 제4차 NAP 공청회 발제문(자유권) ————— 95
| 이 상 경(서울시립대학교 법전문 교수)

토론

- ①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7
- ② 흥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21
- ③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139
- ④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5

CONTENTS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Section

0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발제 1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 149
| 송 세 련(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 165
| 김 명 주(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토 론

- ① 디지털시대 인권 /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 189
- ② 디지털시대 인권 /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법학박사 ————— 193
- ③ 기업과 인권 / 김민우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 197
- ④ 기업과 인권 /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01

Section

0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발제
1



사회권 분야 평가 및 제언

이 주 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사회권 분야 평가 및 제언

■ 이 주 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I 개관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사회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노동권 분야 18개 과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분야 18개 과제,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분야 24개 과제, 교육을 받을 권리 분야 4개 과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분야 13개 과제,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분야 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아래 별지1 참조)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2017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와 2015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22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사회권 관련 권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바탕으로, 제4차 NAP 초안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중 노동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사회보장권 포함) 분야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 제언하고자 함.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건강권,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역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에 비추어 기본계획 초안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인권 현실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 비차별과 평등은 사회권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 분야에 관통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핵심원칙이자 권리임. 따라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어려운 취약집단 파악, 동등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또는 현실적 장벽의 제거, 실질적 권리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마련 등은 각 권리별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임. 이러한

점에서, NAP 각 분야별 계획은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와 관련한 과제들과 함께 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즉, 각 권리의 보편적 실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는지가 제4차 NAP 초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에 해당함. 본 발표에서는 취약집단별로 사회적 분야별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음.

II 노동권

1. 관련 규범 및 권고

-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 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향유할 권리(공정한 임금·보수,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승진에 대한 동등 기회, 휴식·여가·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 유급휴일), 노동조합 결성·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 유해한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고용 분야에서의 성평등, 인종차별금지, 장애차별금지, 장애인이 개방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 제공 보장 등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4호, 제24조, 사회권규약 제6-8조, 제10조 제3호, 아동권리협약 제3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호,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e)목(i)(ii),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호 (가)-(마)목, (사)-(카)목, ILO 핵심협약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헌법 제32조 제1항, 제3-6항, 제33조
-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 비정규직 고용: 하청·파견·독립계약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포함) 등 모든 형태 노동자에 노동관련법 적용, 사용자의 계약 갱신 부당 거부 시 제재, 근로감독 통해 비정규 고용 남용 감독 및 억제 강화 (사회권위원회 2017, 28-29)
- 노동법·사회보장법 적용: 근로기준법 등 정당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최저기준과 사회보장 전 산업분야 적용. 특히 농업·어업·가사노동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없도록 (사회권위원회 2017, 30-31)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보수: 최저임금 전 산업 분야 적용, 근로감독과 제재수단 통해 최저임금 준수 확보 (사회권위원회 2017, 32-33)
- 안전한 노동조건: 노동비용 최소화·사고위험 부담 이전 목적으로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등 활용 우려 (사회권위원회 2017, 28)
- 노조 가입·결성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의적 개입 예방,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필수유지업무 범위 제한, 파업권 존중 (사회권위원회 2017, 38-41)
-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개방된 노동시장 참여 배제·제한하는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장애인 접근성 증진, 광고·채용절차·합리적 편의 제공·재교육·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55-56)
-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초단시간 일자리 편중 해결, 보육 서비스·유연근무제·남성육아휴직제도 등 조치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 (성인지적) 부문간 직무평가 등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 이행 감독 (사회권위원회 2017, 34-35) 비정규직 높은 여성 비율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민간 및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서 고용상 성평등 확보 노력 강화 (자유권위원회 2015) 높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엄격 시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양육 책임 공유·분담 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관련 제도 확대 및 인식제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8)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고용허가제상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여권압수 등 사실상의 강제노동 금지, 효과적 조사·처벌,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 노동권·사회보장권

보장 (사회권위원회 2017, 36-37) 이주노동자 가족결합권 효과적 보장,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장기 또는 영주 체류 가능성 막아 미등록 체류 위험을 높이는 점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목적 또는 효과 발생하는 법제 개정 통한 차별 폐지 (이주노동자 비중 높은 산업 분야에서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신체적·언어적 폭력, 근로감독 및 수사·처벌 통한 노동착취, 괴롭힘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효과적 보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9-12)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근로감독 통한 강제노동 방지 (자유권위원회 2015, 40-41)

- 청소년 노동: 노동권 침해 빈번 발생 우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 조치 강구 (아동권리위원회 2019)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 핵심과제71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제 적용, 새로운 형태 노무제공자 노동관계법 보호 확대, 플랫폼 종사자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보장), 핵심과제 72 돌봄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공공운영비율 상향, 아동·노인·장애·간병 등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지원, 휴식권 보장) 핵심과제75 위장도급 문제 대응
-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 핵심과제6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 핵심과제 75 위험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방지
- 장시간 근로 개선: 핵심과제66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핵심과제67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핵심과제73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
- 파업권 존중: 핵심과제65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핵심과제58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 핵심과제59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핵심과제37 고용허가제 개선, 핵심과제 38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청소년 노동권 보호: 핵심과제55 청소년 노동권 보호지원 강화



2. 제4차 NAP 노동권 분야

가. 개요

- 취약노동자층의 노동권 보호·증진: 노동권 향유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사내하도급·특수형태근로자, 신중년 근로자(고령자),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정책과제로 ①청년맞춤형 근로지원, ②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③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④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⑤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⑥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⑦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⑧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⑩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⑬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포함하고 있는 취약노동자층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평등 증진 ③성별 임금차별 해소, 2. 여성 ④모·부성권 강화, 4. 장애인 ⑩장애인 고용 개선, ⑪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5. 노인 ⑤노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6. 외국인과 재외동포 ⑨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⑩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⑰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 일반적 노동권 보호·증진: ⑨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⑩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⑪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⑭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⑮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⑯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⑰공정임금체계 확립, ⑱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NAP 노동권 분야 대부분 과제는 제3차 NAP 지속 과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새로운 과제로 추가되었고, 장시간 근로 개선,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4차에 선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관련 계획으로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포함)은 제3차와 달리 제4차 노동권 분야 기본계획과제에서 제외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 중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핵심과제 67)가 노동권 분야 NAP에 포함되어 있음.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47),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58),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59),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38),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71), 위장도급의 문제 대응(75),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 강화(55)는 제4차 NAP에 관련 기본계획이 있으나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각각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권 관련 권고 중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66),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64), 위협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 방지(74),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65), 사업장 전자적 감시의 문제 대응(68), 돌봄 노동자 노동여건 개선(72),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37)은 제4차 NAP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평가와 제언

- 노동권 분야 과제 중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주노동자, 장시간 근로 개선, 파업권의 존중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비정규직, 사내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관련: 기본계획과제 ⑦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⑧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민간부문에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 노조 등 취업규칙 개선명령 신청권 부여, △사업장 고용구조 개선·차별해소 진단 및 개선 이행 지원, △파견·사내하도급 노동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통해 불법파견 사용 근절,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제고는 비정규 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강화된 근로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관련 있음. 하지만, 제3차 NAP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세부과제들이 실제 비정규직 고용을 남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시키고, 고용형태별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뒷받침되어야, 각 표제 하의 세부과제가 실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적절하고 타당한 계획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후속으로 필요한 정책과제가 제4차 NAP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음.



- 모든 형태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세부과제에 반영되어야 함. 즉,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사노동자, 농축산업 노동자, 감시·단속적 업무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적정 보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계획이 제4차 NAP에 포함되어야 함. 현행 NAP 초안에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 실태조사, 자문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방향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령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였음.(핵심과제 71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기본계획 과제 ③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1. 평등 증진 ③성별 임금차별 해소, 2. 여성 ④모·부성권 강화)
 - 노동권 분야 NAP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안착, 모성보호 육아지원 대상 확대,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고용안정 프로그램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이 관련 있으나, 직접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과제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해당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토록 해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포함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 실태 집중 감독 지속,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 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확산 지원을 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모·부성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 의심 사업장에 대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 강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성별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음. 또한,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의 배경이 되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편중, 일-가정 양립의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촉구하였음. 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음. 나아가, 사회권위원회는 부문 간 직무평가 실시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감독을 권고했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왔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성별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NAP에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초단시간 고용(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실태 파악,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 제외 규정 개정 검토 등이 기본계획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일·생활 양립과 관련해서는, 일·생활 양립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기본계획 과제에 포함되어야 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포함된 직무평가 및 직무기반 인사관리는 기존의 직무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필수적 전제로 해야 함.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에 영향을 받은 직무가치 평가가 기반이 되어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므로, 직무평가와 관련하여 ILO의 『성인지적 직무평가 가이드』를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관련: 기본계획 과제 ⑥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6. 외국인과 재외동포, ⑨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⑩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제4차 NAP 노동권 분야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 및 정책 홍보, △농축산업·어업 분야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집중 점검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는 6. 외국인과 재외동포 하에 ⑨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⑩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과제



로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노력 이외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노사 의견수렴을 통한 숙식비 징수지침 개선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음.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사용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은 이주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사실상 강제노동에 이르는 처우를 근절하고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처벌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그런데, 제3차 NAP에서 이미 추진된 사업장 현장 점검,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그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제4차 NAP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찾기 어려움. 대표적으로,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이러한 방향은 정책에 수용되지 않고 있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가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처우가 불합리하더라도 문제제기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을 양산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농·어업 부문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라는 사회권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농축산·어업 부문이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시간 규정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권 분야 NAP에 포함되어야 함.
-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 핵심과제 38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금지 및 처벌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구제를 위한 노동청 진정 사건을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 △농어업, 5인 미만 기업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도 NAP 반영 검토 필요.

○ 장시간 근로 개선

-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가입국 평균 1,716시간보다 길고, 예를 들어 독일보다는 연간 521시간 더 길게 노동함. 주요국과 법정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독일 1일 8시간, 최대 1일 10시간, 프랑스 주 35시간, 최대 주 48시간, 영국 1일 8시간, 최대 주 48시간, 일본 주 40시간, 최대 주 51.25시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2022, pp. 2, 6)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 유급휴일 포함 휴식 및 여가는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이 보장하는 인권.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 성평등한 돌봄 부담 등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며 이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제3차 NAP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여 최대 주 52시간 제한 명확화, △법정 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 △주52시간 근로정착 위한 지도·감독 강화, △근로자 임금감소분 기업 보전 시, 기업의 보전금대 일부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권고 핵심과제 66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선 적용대상 확대 및 특수형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법률 제정, △야간근무 포함 교대 근무는 공공부문 및 장치산업 등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도록 법령 제정,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 마련 및 시행을 제시하였음.
- 여전히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현실,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나아가 일·생활 양립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4차 NAP에 장시간 노동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 파업권 존중

- 사회권위원회는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또한,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파업권

이 위촉되는 데 대해 우려하였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관련 권고를 하였고, 유럽연합도 평화적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한-EU FTA의 노동조항 위반으로 문제제기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권고 핵심과제 65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개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제외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현행 노조법 제3조 개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대상 제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 노무 제공 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에 의한 형사책임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노조법 제4조 규정 개정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파업권을 존중하고 파업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4차 NAP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III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 기준 및 권고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적당한 식량·의복·주택을 포함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성평등하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인종 차별 없는 평등한 주거·보건의료·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향유 보장,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장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향유 보장, 장애 관련 니즈를 위한 적절하고 경제적 비용의 서비스·용구 및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등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호,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1호, 제27조 제1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호 (마)목, 제13조 (가)목, 제14조 제2호 (다)목, (아)목,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e)목(iii)(iv),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 헌법 제34,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3항
-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권(사회보험) 전 분야 확대 적용 (사회권위원회 2017, 30-31)
 -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자격 심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수준 적정 보장 (사회권위원회 2017, 42-43)
 -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자격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소 없애 합리적 비용으로 모두가 의료서비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사회권위원회 2017, 45)
 - 사회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책무성 강화: 공공·민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감독 및 책무성 강화 (사회권위원회 2017, 12(c))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사회권위원회 2017, 47(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15-16),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41-42)
 - 수질 관리 등 안전한 식수권 보장 (사회권위원회 2017, 50-51)
 - 적절한 주거권 보장: 주거 부적정 공간 거주자(홈리스) 문제 원인 해결 및 대책 마련, 공공주택 등 합리적 비용의 주택 공급 확대, 민간부문 주택 가격 규제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임차인의 장기적 주거안정성 도모, 퇴거조치 시 협의권·절차상 보호·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 또는 정당한 보상 (사회권위원회 2017, 53-54)
 - 노인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국민연금 자격 요건의 적절성 보장, 급여수준 적정하게 책정 (사회권위원회 2017, 47(a))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및 사회보장권: 장애수당 수준의 적정성 검



토, 장애인 연금제도 자격 확대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57-58)

- 성소수자의 사회보장권: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거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적이거나 차별적 효과 초래하는 법규 개정 (사회권위원회 2017, 25(b))
- 이주민·난민의 사회보장권: 외국인도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해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사회권위원회 2017, 26-27),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 사회보장권 보장 (사회권위원회 2017, 37),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 이주아동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조치 채택, 이주민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 국적과 무관하게 기초적인 사회적 지원 보장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9, 31-32) 국적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보장 (아동권리위원회 2019, 40(a)), 보호자 미동반 아동·장애아동 포함,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학대피해의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과 관행 개선 (아동권리위원회 2019, 43(c)), 국적과 체류 상태 관계없이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재활치료·직업훈련·활동지원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53-54), 장애를 가진 이주민·난민이 기초생활보장·장애급여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 보장되도록 조치 채택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57-58)
- 아동 빈곤 해소: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통계자료 수집,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채택 시행,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청소년)의 시간제 고용 비율 파악·대응 (아동권리위원회 2019, 40)
- 사회지출 증액: 소외·취약계층의 사회권 향유 보장, 사회적 불평등 완화 위해 사회 지출 투자 대폭 증액 (사회권위원회 2017, 12(a))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취약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 핵심과제7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호 방안 마련, 핵심과제71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중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방안 마련, 핵심과제76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핵심과제49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핵심과제69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 노인의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핵심과제49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후의 삶 영위하기에 적절성 여부 검토,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고려한 실태 파악 통해 실효적 정책 대안 마련, 기초연금액 상향, 무급 가사노동 여성을 위한 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검토), 핵심과제50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지역사회 내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체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야간돌봄서비스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다양한 재가급여 확대)
- 장애인 주거 및 사회서비스 지원: 핵심과제42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장애유형과 정도 반영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 및 개인 욕구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재가 장애인 포함 자립생활 지원 방안 수립, 24시간 돌봄·지원 필요한 중증장애인 위해 지역간 편차 없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핵심과제4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활동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하도록 개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발달 정도 및 여건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발달장애 자립생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
-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핵심과제35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정착 지원 강화
- 이주민의 건강보험: 핵심과제36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핵심과제41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중 이주아동의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2. 제4차 NAP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분야

가. 개요

- 사회보장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기본계획으로 유지하고 있음. 아프면 소득보



장을 받으며 설 권리를 제도화하는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이 제4차 NAP에 새롭게 포함되었음.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포함된 사회보장권 관련 기본계획에는 4. 장애인 ③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④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지원 강화, 발달 장애인 지원 강화) 5. 노인 ⑤노인소득보장 대책 마련(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수당 수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검토 등), ⑥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 실현가능한 연금 개혁방안 마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시행 및 연금개혁과 연계한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⑦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 서비스 강화(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 ⑧농지연금 활성화 등이 있음.

- 식수권: 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⑤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식량권: 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주거권: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그 외 취약집단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관련 기본계획으로 ⑰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⑱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개선(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6.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제4차 NAP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분야 대부분 과제도 제3차 NAP 지속 과제.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이 새로운 과제로 추가되었고, △공공부조 혁신(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구축은 제3차와 달리 제4차 노동권 분야 기본계획과제에서 제외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관련 제4차 NAP 권고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호 방안 마련(핵심과제 70),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중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방안 마련(71),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69),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정착 지원 강화(35),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4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4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44),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49) 노인 돌봄을 위한 필수서비스 강화(50)는 제4차 NAP 초안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또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정책방향에 어느 정도 권고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각각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관련 권고 중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36),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중 체류 자격 무관하게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허용 또는 유사한 의료 서비스 보장 위한 제도 마련(41),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전면 확대(76)는 제4차 NAP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평가와 제언

-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 중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 외 질병·부상 시 소득보장,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기본계획과제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저소득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모소득 배우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가입확대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 확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과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전환도 기본계획 과제에 속함.



- 이러한 계획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경제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관련 있음.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7.1. 시행)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호 방안 마련(핵심과제 70),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방안 마련(71)과 관련 있음.
 - 이러한 과제들은 제3차 NAP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들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각각의 사각지대 해소에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현황을 바탕으로, 제4차 NAP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사각지대 해소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모든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구현의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제4차 NAP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업무 외 질병·부상 시 소득보장 (관련: 기본계획과제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제도는 사회보장권으로서 사회보장체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사회권위원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9호, 2009, 14항) ILO의 사회보호최저선 권고(202호 권고) 역시 상병급여를 모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 상병수당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상병수당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됨. 제4차 NAP에서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을 과제로 포함한 것 바람직.
 -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법령 정비 등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상병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 핵심과제 69에서 밝혔듯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휴가·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공적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 사회권위원회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권고하였음.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즉 비수급 빈곤층이 2018년 말 기준 73만 명으로 추정됨. 이같은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주요 요인에는 재산소득환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함(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제외). 기본재산공제액도 일정하게 상향되었으나, 공공부조 사각지대, 즉 빈곤층이 공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적임.
- 제4차 NAP에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방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권고 핵심과제 49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빈곤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시하였음.

○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 이주민(난민, 인도적 체류자 포함)의 사회보장권 보장에 대해,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음. 구체적으로, 국적이나 체류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의료보장,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이주민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선, 국적과 체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재활치료·직업훈련·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 관련 급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임.
-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는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관련, 핵심과제 35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서 △난민인정자에게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재정비, △노동능력 없는 취약계층이나 부상·질병으로 생계유지 활동할 수 없는 등 긴급 구제 필요성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



해 생계비 지원 강화, 핵심과제 36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에서 △이주민에 대해서만 체납 시 보험급여 즉시 중단 및 체류 연장에 불이익 주는 제도 개선,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핵심과제41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사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이주민·난민·난민신청인·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어떠한 아동도 의료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제4차 NAP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

- 제4차 NAP 초안은 주거권과 관련해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기본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부적정 공간 거주 문제의 원인 해결 및 대책 마련, 공공주택 등 합리적 비용의 주택 공급 확대, 민간부문 주택 가격 규제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임차인의 장기적 주거안정성 도모, 퇴거조치 시 협의권·절차상 보호·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 또는 정당한 보상을 권고하였음.
- 이같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제4차 NAP 초안이 기술하고 있는 주거권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과 실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특히,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제4차 NAP에 포함되어야 함.

IV 일반적 제언

-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주요 인권과제와 이를 국가의 의무로서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해야 함. 시민사회와 인권기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 인권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인권상황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해에서 NAP가 유엔인권기구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정책적 틀로서 역할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그 성과가 점검되기 위해서는
 - 1) 해당 기간 중 목표 실행을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2) 세부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제4차 NAP 초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권을 포함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별 목표와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소관부처별로 세부과제 추진·시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별지1>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1. 노동권	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④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방지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⑧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⑬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지원 강화
	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⑯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⑰ 공정임금체계 확립
	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신규)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③ 수도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⑤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신규)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신규)
	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지원 강화
	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⑤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강화 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⑪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개선 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⑬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⑮ 생활 소음 대책 마련 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⑲ 화학물질 유해 정보 확보·공개(신규) ⑳ 구급시설 의료처우개선(신규) 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신규) ㉒ 커뮤니케이터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신규) 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신규) 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신규)
4.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② 장애인 교육환경개선 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⑥ 지역문화기반 구축 ⑦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⑧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⑨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⑪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개선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①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신규)

Section

0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발제
2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분야’에 관한 발제문

성 상 환(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분야’에 관한 발제문

■ 성 상 환(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I 도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전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5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서로 연계하고, 종합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구현하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한다(국가기록원 사이트 참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기초가 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보호에 주력하며 최근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득불평등,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의료접근성 및 교육, 주거와 노동권 등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고령화 문제, 외국인과 재외동포, 장애인, 탈북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인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발제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의 내용이 우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란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 제안된 계획안의 주요 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에 코멘트를 제시함으로써 발제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II 총론: 사회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사회권은 인권의 중요한 개념이다. 사회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복지, 존엄성,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권리들은 의료, 교육, 주거, 사회보장, 고용 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사회권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 틀, 정책, 사회경제, 문화적 조건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란 성적 지향, 성적체성, 장애, 나이, 이주 배경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수립 과정에 있으며, 핵심추진과제로 평등문제, 성차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탈북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마찬가지로 제4차 계획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된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동성결혼이나 동성부부의 입양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은 성전환 수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적체성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는 소수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다수자들이 승인 혹은 묵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수자라는 사회적인 상태가 다수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 속에서 권리가 어떻게 배타적으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유선 외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비교연구인 '제6차 2010-2014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 또한 한국인은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일관되게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거부감(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¹⁾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 단순히 개인의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영역에 대한 논평을 하기로 한다.

III 개별 영역에 대한 논평

한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각 영역별로 개선할 부분과 경우에 따라 국제적 비교 관점을 제시하겠다.

1. 평등증진

평등증진 분야에서 4차 계획은 다양한 노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평등분야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평등증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 사회적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023년 올해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한겨레 2023.4.10).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겨레 2023.4.10.) 또한 국제적 비교에서도 한국은 평등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이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도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크

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율 및 경제적 평등성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2. 여성

한국은 여성의 사회 및 경제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와 여성의 경력 개발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여성발전기본법」(’96. 7. 시행)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15년 7월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확보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여성의 지위는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며, 한국 정부도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임금, 노동시장 참여, 정부 부문의 대표성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양성평등을 위해 한국이 가야하는 길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 당시 한국 여성의 임금 소득이 남성의 약 63%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성별 임금격차는 ’21년 기준 31.1%)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또한 이 2017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2%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떠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경력의 단절을 불러오고, 이 경력단절은 연금수급권의 남녀간 격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동보고서). 제4차 기본계획과제에도 여성의 임금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유도한다고 나와 있어 법적인 강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성별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사결정 권한 증대’ 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직에서도 지도급 고위직의 성비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고위직의 성비구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5개년 계획에서 어떠한 성비변화를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3. 아동 및 청소년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 내 폭력 및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사실 한국사회는 아동들이 과도한 학업경쟁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하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있다는 협약내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위로 나타났다(출처: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23년 5월5일 [여성논단] 5월,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행복, 자살율, 출산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지속적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지표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외로움이 최하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학업성취 읽기와 수학에서 최상위(4위, 2위)인 사실과 극명히 대조된다. 결국 아이들은 경쟁 환경에서 학업 수행 능력은 높지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외로워 사는 게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는 우리나라 10대의 삶의 질이 매우 심각하게 나쁘다는 경고로 해석된다(송다영 칼럼, 여성신문 2023년 5월5일). 사실 아동인권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문화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 공적인 개입이 힘들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한국의 사회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계획에 나타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부모의 교육열 관계구조를 봤을 때 종속적인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한국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주도가 되는 국제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모든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가 개발도

상국으로 이루어졌을 때 해당국의 여성인권이나 아동/청소년인권 차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장애인

한국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기회 부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 참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접근성 개선 등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연합뉴스 2020.6월19일 보도).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큰 집단은 인식차원에서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거꾸로 한국은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 편견 및 차별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증진과 공공 시설 및 교통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인권차원에서 한국의 장애인의 대중교통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조치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5. 노인

한국에서 노인의 권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나,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급격히 고령화되는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OECD국가들,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은퇴자들의 연금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진행하면서 노인 인구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강화하



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고 보고 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의 배가 넘고, 미국(23%)과 일본(20%)보다 훨씬 높다(경기일보 2022.5월25일 보도참고). 보건복지부의 '2019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의 3배이다. 장수국가인 일본의 22.8명보다 3배에 가깝다(경기일보). 한국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노인학대나 노인차별도 심각한 현상이다. 노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이 힘든 농촌지역과 도시의 빈곤 노인의 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과 재외동포

이주민의 권리는 이주민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다문화인식개선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경우 인식개선에 긍정적이나 지난 수년간 성인들의 경우 다문화인식개선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또한 이주민들의 언어·문화·교육·건강·고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주민의 정치참여와 시민권 획득에도 많은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계획에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외국인 및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불평등 문제가 남아있어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이며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나타난 정책 중 내실을 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적응·정서지원 및 이중언어 인재 발굴·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확대 사업에서는 현재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재들에 대해 이중언어 인재로서 그들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지속적으로 언어능력을 증진해 주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인재들은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이중/다중 언어능력이 있는 자들인데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추수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용허가제에 본질적으로 내재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와 인권 교육 강화, 침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성별, 연령, 피부색, 인종, 종교,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이행을 감시하는 독일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더욱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이며 종교관용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통합계획(Nationaler Integrationsplan)’도 시행되고 있다(조효제 2015, 현대 독일의 인권담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보고서).

다문화교육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문화 이해 촉진을 통해 성인들의 다문화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 제3차 UPR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주민차별금지에 대한 권고 등 이주인권에 대한 대응책이 국제적으로 요구되었다. 지난 3년간 일반 아동/청소년들의 다문화인식개선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들의 인식개선도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다.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차원에서의 보호 지원정책이 진화해 온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021년 무연고 탈북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규정을 신설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동성애자 집단,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순이다. 이를 보면 한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민자, 이주노동자보다 심리적으로 거리가 더 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반 한국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접촉면이 많으면 가족, 친구처럼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관계처럼 한국민의 이들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IV 나가며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증진에 있어서 아직 많은 과제와 도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동성결혼이나 동성부부의 입양,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군복무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이주민 등에 대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도 한국보다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육아/아동지원금을 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협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속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국가인 독일의 기본법에 나타난 인권 보호 접근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인권을 언급하며 '인간'이 아닌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류 보편적인 초국적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강한 집단주의로 특징 지워 지는 사회이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무시될 때도 많다.

2020년 6월1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연합뉴스 2020.6월19일 보도). 이러한 한국민의 인식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인권상황의 개선은 큰 국가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NAP(National Action Plan)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을 해 왔고 또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ection

0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토론



-
- ❶ 노동분야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❷ 복지분야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 ❸ 여성분야 /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장
 - ❹ 아동분야 /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❺ 장애분야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KDF 사무국장
 - ❻ 이주분야 /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❼ 북한인권 /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에 관한 토론편

-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 김 근 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및 발제문에 관한 총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의 내용과 범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 이하 NAP) 에서의 노동분야는 광범위한 노동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제4차 NAP 노동권 분야 대부분 과제는 제3차 NAP의 연장선에 있음.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새로운 과제로 추가되었고, 장시간 근로 개선,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4차에선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관련 계획으로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포함)은 제3차와 달리 제4차 노동권 분야 기본계획과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과거 NAP와 비교할 때, 노동권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본권(좁은 의미의 노동권)’에 관한 주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임
- 최근에는 인권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융합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애초 양자가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서비스(전달체계와 행정규제개선 포함)가 인권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발제문에 관한 의견과 토론문의 관점

- NAP에 관한 앞선 두 발제문의 문제의식은 물론 정책적 검토 사항에 대하여 강하게 공감함
- 특히 이주영 교수님의 발제문에 관한 노동권 분야의 평가와 제언에 관한 내용, 즉 노동권 분야 과제 중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주노동자, 장시간 근로 개선, 파업권의 존중”은 의견을 같이 함은 물론,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함

- 이하에서는 발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생각해 볼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의 변화

○ ILO의 기본협약과 기본적 노동인권

- 1998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이하 ILO)는 제86회 총회에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관한 선언과 그 후속조치」(ILO 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1998년 ILO 선언」)를 채택

- 이 선언은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Copenhage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에 의해 재촉됨

- 1998년 ILO 선언의 핵심적 특징은 (아래의) 네 가지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리의 확인, 특히 그 원리를 존중, 촉진, 실현할 의무를 각 회원국의 기본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고 새로운 절차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것

(가) 결사의 자유와 효과적인 단체교섭권의 승인((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b)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다) 효과적인 아동노동의 폐지((c)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라) 고용과 직업과 관련된 차별 금지((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 ILO는 선언의 채택과 함께 4가지 기본적 원리/권리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처음에는 7개였지만 이후 1개를 추가한 총) 8개 선별하여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의 지위를 부여

-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and its 2014 Protocol)*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 2022년 ILO는 제110회 총회에서 「1998년 ILO 선언」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종래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던 기본적 원리/권리에 산업안전보건을 더하고 관련 협약 2개를 기본협약 목록에 추가한 것이다. 즉 “(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그것임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2006 (No. 187)*
- 결국, NAP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ILO의 협약 중 기본권에 해당하는 ‘기본협약’이며, 이 가운데 미비준 협약은 제105호 협약만이 남아 있음
- NAP 보고서 차원에서 ILO 국제기준에 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
 - 이를 바탕으로 ILO 국제기준 중 미비준 기본협약이 노동권 보장에 필수적인지 여부가, 적어도 기본권적 측면에서는 가장 최우선 과제

□ **쟁의행위와 책임 : 파업권을 제약하는 실정법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 **쟁의행위와 책임에 관한 논의**
 - 민사책임의 제한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
 - 형사책임의 제한 : 주로 형법 제314조에 의한 형사책임 적용을 둘러싼 논의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법률에서의 제한에 관한 논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금지와 자유형 이상의 처벌 규정

벌칙	금지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피케팅에서의 폭행·협박금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 안전보호시설 방해 행위 금지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 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금지 ○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 수행 위반 ○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 위반 ○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 중재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기본권 제한적 처벌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논의 : 인권정책의 측면에서 접근 필요

□ 추가적 논의 사항

- 노동분야 정책에서의 접근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의 정책적 방향 : 인권정책적 측면, 규제완화 및 개선의 측면, 노동시장 활성화의 측면
 - 고용서비스 등 행정적 제도에서의 인권 친화적 접근법이 갖는 의미
- 노동의 측면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접근법
 - 노동력으로서의 접근법의 전환 필요성 :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한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정책의 타당성
 -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정책 활용 가능성 모색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복지분야 토론문

■ 김 태 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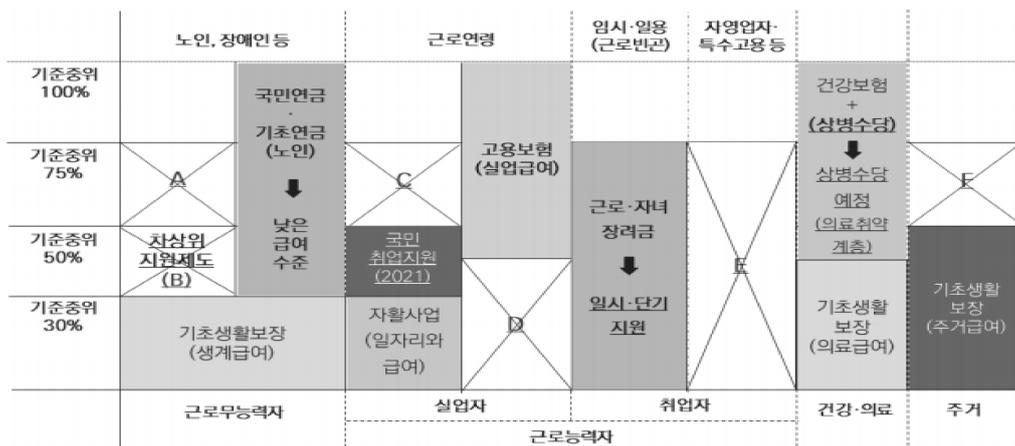
- 뜻깊고 의미 있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이 한국의 인권을 높이고,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분야는 복지분야입니다. 복지분야가 방대하여, 오늘 발표된 복지관련 정책의 모든 것을 토론하기는 쉽지 않고, 아동, 장애인, 노동 등의 분야는 다음 전문가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 이들 분야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
 - 오늘 교수님 발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많은 부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 복지와 관련된 분야만 정리해도 여러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 직접 토론의 내용은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건강권에 관한 권리 부문입니다.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신규)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신규)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지원 강화
	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⑤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⑮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신규)
	㉒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신규)
	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신규)

□ 오늘 제안하신 정책을 기초로 보면, 향후 복지분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현상과 급여성정성 부문에 대한 대응이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것들에서 부족한 부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분야의 사각지대를 표시한 것입니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 확대를 통해 일정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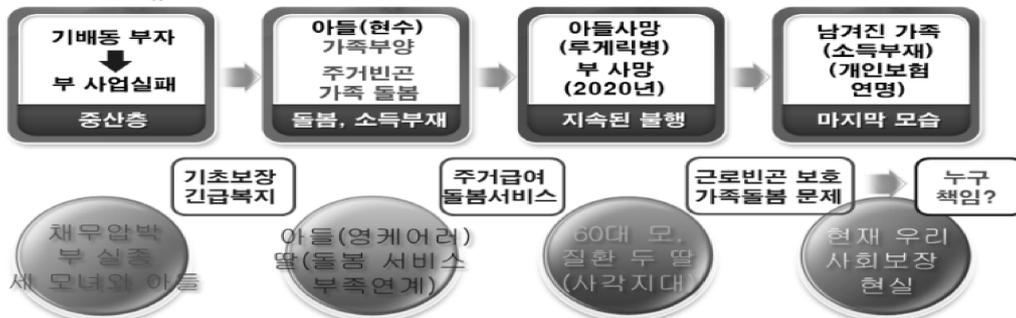


자료: 김태완 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재인용)

- 이러한 변화는 3차와 4차 기본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영세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대 등입니다.
 - 4차 기본계획에서는 근로자와 주거보장 그리고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병수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쉬운점은 복지분야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혹은 50% 이하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 적정생활수준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특히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양극화,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및 고용보장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제시된 기본계획 속에서도 동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2014년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후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충분히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22년 수원세모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직면해 보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소득 혹은 서비스 지원이라는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위기가구의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점입니다.

② 수원세모녀 사례를 통해 본 소득 및 서비스 제공 한계

● 2022년 8월 21일 미주소지 거주 세모녀 사망(60대 모, 40대 두 딸(희소병, 정신질환))



자료: 김태완 외(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재인용)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위기, 새로운 취약계층 혹은 새로운 약자는 중첩적이고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원체계 역시 다중적, 다차원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유로 기본계획과 같은 종합적 계획을 통해 개별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살펴본다는 점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시된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제도간 연계 혹은 협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과다채무를 가지고, 가구내 돌봄대상자(노인, 장애인 혹은 아동 등)가 있을 경우 동 가구는 금융지원에서 안정적 생활과 관련된 주거지원, 돌봄대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등 복합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현재 기본계획 속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쉬우며, 향후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복지분야 전반의 현황과 대응을 위한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가 부족한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인권 분야가 다루는 영역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기본계획속에서 제안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이 단순 나열식이 아닌, 잘 정리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여성분야 토론문

이윤선 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장)

들어가며: 정부는 그동안 법 제·개정 및 정책·제도를 만들어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앞서 이주영 교수님, 성상환 교수님 두 분 발제자의 여성분야 관련 -성별임금격차, 여성대표성, 여성근로(일·생활 양립)- 개선 과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본 토론자는 발제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여성 분야'에서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안된 계획안의 보완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방지. 전·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크다. 대검이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해에 발생한 살인범죄는 총 692건으로,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9.4%(약64건)이 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최근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연인 간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제재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마련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보호.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¹⁾에 따르면 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 여성이 75%, 10~20대가 36%²⁾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 및 정책·제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피해자는 늘고 있고,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³⁾.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성착취 플랫폼 운영자 등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항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새로 도입된 ‘온라인 그루밍,’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조항들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법적 의무화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교육이 확대되지만, 교육이 수동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군대, 학교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을 각 기관이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획과 더불어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적점검이나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교육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검토·개선이 필요하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가해자 처벌 시에는 기존의 형법이 적용되어 인신매매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인신매매범죄를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 성매매가 여성폭력⁴⁾⁵⁾이자 성착취임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및 수요를 차단하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여성가족부(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항, “성매매피해자” 정의 참조.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제1항, “여성폭력” 정의 참조.



여성폭력피해 통합적 지원체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폭력 유형별 개별입법으로 놓치기 쉬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개별입법에 따라 폭력 유형별 예산이 구분되어 있고, 예산의 출처도 달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폭력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여러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통합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가며: 지난해 인하대 성폭행·사망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얼마 전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그 발생 원인으로 두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는 “성 우열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성차별 및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폭력 발생 원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며,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법·정책·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보완·수립 후, 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 아동분야 -」에 대한 토론

■ 황 옥 경(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아동과 가족은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서 일련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
- 정부는 1차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의 전략적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아동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 특히 양육 위기 상황의 아동과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을 도모
- 최근 아동인권을 둘러싼 부모 및 보호자, 교사 등 아동관련자들간의 긴장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관련자간 권리와 책임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아동의 인권이 위협받는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음.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아동유기 및 불법입양 대책 강화, 그리고 보편적 출생 등록제 등의 실시 계획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미루어 왔던 난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토론자는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2023~2027)에 포함된 다양한 아동인권 증진 사항과 아동 분야 발제자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덧붙여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토론하고자 함. 먼저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기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만성적으로 아동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높은 자살율, 부모 및 보호자의 우울, 중독, 실업 등으로 인해 독성 양육 상황에서 자라는 아동의 발달 위기 상황의 방지, 과도한 학업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확대,

놀이와 여가의 부족, 아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아동의 인권을 위협하는 만성적인 문제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돌봄위기 가구 아동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자문 및 직무 교육 등 제공하는 현장 슈퍼비전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나, '돌봄위기 가구'를 어떤 준거에 의해 확인발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문 등의 내용이 포괄적임.
- 특히 우리나라 아동자살이 세계적으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4차 기본계획안에 이와 관련하여 신청 시 우울증, 자살예방을 위한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자살 원인과 유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근거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2. 디지털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인권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 코로나 19는 디지털 성장환경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꿈. 이제 아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사용자로서의 아동의 역량 획득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안전과 보호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입안실행 해 옴.
- 이제,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른 디지털 역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민권 배양 등과 관련한 인권정책이 개발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3.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인권정책계획의 경우, 각 계획별 구체적인 성취 목표와 실행 계획 명시 필요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학교 폭력으로부터 인권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위 프로젝트 기능 강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개선,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등은 4차에 이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거의 포함됨.
- 위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배경과 각 차별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의 성취



목표 및 실행내용의 동일성 내지는 차이가 기술되어, 각 사항에 대한 아동인권 보호 /증진 등의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본계획안에 계속 포함되는 위 각 사항의 정책과 제도가 관계부처 등에 따라 독자 실행되어 계획안의 실질적 인권보호 성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4.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 보완 필요

-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선진 외국과 달리 피해 아동을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것은 피해대 아동에게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음.
- 생활보호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야 하는 책임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것 등은 피해대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임(황옥경 외, 2022).
- 4차 기본계획안에 “피해아동 및 그 가정 기능회복과 가정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집중 사례관리“와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일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가능성도 모호.
- 영국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가정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부모 역량까지 평가 함. 또한 원가정 복귀의 목적을 셋팅하고, 부모양육역량에 대하여 반복하여 계속된 평가가 이루어짐. 위험과 의사결정 가정복귀 후 가족간 재애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과정은 원가정 복귀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실행됨.
- 가족과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원가정 복귀를 통해 부모와 재애탁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실행되어야 할 것임(황옥경외 2022a; 황옥경외 2022b).

5. 코로나 19 팬데믹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간의 연관성과 효율적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 19 당시 감염 확산예방에 주력하여 아동인권 보호가 소홀하였다는 지적(황옥경 외, 2020; 황옥경 외, 2021).
-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동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아동을 위한 설명과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지역사회 등 관련 영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작동함.
- 재난 시에도 아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지침의 연관성을 분석 확인하여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6. 출생~아동청소년기까지 건강발달 체계 구축 및 건강발달 지수 활용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 과거 유례없이 아동우울과 사회 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짐.
-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주요 선진국은 영유아기부터 정서행동발달에서 경계선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신체발달 지수 역시 출생 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 측정지수가 관리되어야 하며, 이 지수는 아동보호서비스 등과 연동하여 활용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의 가장 기초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체건강발달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기관별 연동 활용 방안 등이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서사회행동 발달 지원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위 사항 외에도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1. 아동인권 보호 관련자 간의 권리와 책임의 한계 구체화, 명료화

- 최근 불거진 부모 권리와 아동권리, 그리고 교권과 아동권리간의 긴장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련자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서 일부 기인 함.



- 어른이 아동의 관점을 진지하게 여기고, 아동을 능력있는 개인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어떤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의사결정은 복잡함.
- 일반적으로 아동인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관련자와 권리긴장과 갈등이 관찰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관련자간 역할과 책임의 범주에 대한 합의된 규칙과 조건을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화함.
어른과 아동 공히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조정하는 것을 중시.
-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관련자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과 제도 및 법률을 개발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어느 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주지하듯, 관련자의 합의된 기준은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이 우선 고려되어 개발.

2. 아동인권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기구

- 선진 각국에서 아동 ombuds 혹은 아동권리커미셔너 등은 아동권리 보호와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현재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다양한 ombuds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옹호활동의 경우 내용과 방식이 제한적이고, 개별사안의 접근성이 높지 않음.
-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아동인권 옹호활동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구제기구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아동인권 보호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

3. 소수자 관점에서의 ‘아동’ 이해와 아동인권 보호의 상관에 대한 재고

- 소수자 관점에서 아동을 보게 되면, 아동을 ‘진보’를 통해 발달해 가는 존재로 이해하게 되고, 이 관점은 아동을 ‘덜’ 발달한 존재로 아동을 바라보게 함.
- 이 관점은 아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다음세대의 시민을 양육하는 방법의 탄생과 연관(Meredyth, & Tyler, 1993; Millei, 2008)

- 아동과 어른 모두 사회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자로 재개념화 할 필요 (Lee, 2001).
- 고유한 특성과 타당성을 가진 아동기라는 인식 필요.

4. 아동통계 구축, 아동인권 보호의 시작점

- 출생이후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충분히, 실효성 있게 구축되지 않음.
 - 통계 구축의 필요성이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의료, 아동, 보육과 유아교육, 학교 교육, 각 지역사회, 부모 양육, 돌봄 상황 등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통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아동은 어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인간 그 자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동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보호와 성장환경을 제공받아야 함.
- 최근 문화, 가치, 그리고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 증가. 아동인권 보호는 사람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치'라는 사회자본을 통해 아동발달과 성인발달의 연관성을 더 높일 것임. 아동인권 보호를 통해 생산적이며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황옥경, 이영애, 박지윤, 명준희(2020). 코로나 10 대응 놀이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 황옥경, 구은미, 박지민, 송미령(2020).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황옥경, 김형모, 이영애, 정선영, 노은선(2022). 코로나 19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황옥경(2021). 보육공공성과 보육 질 향상을 위한 몇가지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포럼 발표 자료집.
- 황옥경, 홍관표, 김형태, 송미령(2022 a).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황옥경, 홍관표, 송미령(2022b). 아동학대 행위자 분리방안 연구.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장애인 정책 분석 및 제언

■ 최 한 별(한국장애포럼 KDF 사무국장)

- NAP는 향후 5년간 한국 정책의 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은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인권 정책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소수자 정책은 특히 다양한 부처에 걸친 지원과 정책적 고려가 중요할뿐만 아니라, 정책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도록 일관된 인권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두텁고 안정적인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NAP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NAP 전반에 대한 발제자들의 총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 토론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세부 의견을 추가하고자 함
- 대표적 국제장애인권 기준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가이드라인 및 한국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음

1. 노동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CRPD/C/KOR/CO/2-3, 55-56)
 - 지적/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및 제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분리노동 형태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우려 표명
 -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보장 및 적용 제외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 탈시설/지적/청각/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보호작업장에서 개방된 일자리로의 전환 계획 수립 권고

- 일반논평 8호-노동권(CRPD/C/GC/8, 3)

3. “의미 있는 일과 고용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개인적 안녕과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차별주의(ableism)’로 알려진 가치 체계가 많은 장애인이 의미 있는 일과 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 장애차별주의는 '보호 작업장'과 같은 분리 고용과 같은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뒷받침하고 비공식 경제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평등 및 차별을 초래하는 장애에 대한 의료 및 자선 모델의 토대가 된다.”

-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율이 비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것은 물리적 지원(보조공학기기, 고용장려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생산력이 낮음/없는 사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차별적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근로능력평가, 보호작업장 등). 따라서 장애인, 특히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인식을 염두에 두고 더욱 적극적 정책이 구상되어야 함.
- 일례로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강원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개발(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 문화예술)하고 중증장애인, 그중에서도 무연고이거나 탈시설하여 가장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일자리는 최근 ILO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도 소개되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노동)와 일반논평8 등의 내용에 부합하여 장애인의 일 할 권리 그 자체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노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인권적 노동 모델로 평가받은 바 있음.



2. 교육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CRPD/C/KOR/CO/2-3)

49.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당사국의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며,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 (...)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4.5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6)를 반복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a)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 일반논평 8호-교육(CRPD/C/GC/8)

11. 위원회는 배제, 분리, 통합(integration), 포용(inclusion)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배제는 모든 형태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직·간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막을 때 발생한다. 분리는 장애 학생의 교육이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부터 떨어져 특정 손상 또는 다양한 손상에 맞춰 설계되거나 활용되는 별도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 발생한다. 통합은 장애인이 기존 주류 교육 시설의 표준화된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그러한 시설에 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포용은 관련 연령대의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참여적 학습 경험 및 학생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을 포함하는 체계적 개선의 절차를 수반한다. 가령 장애 학생을 기관, 교육과정, 교육·학습 전략의 구조적 변화 없이 주류 교육 환경에 배정하는 것은 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통합이 분리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음에도, NAP 초안에 장애인 통합교육¹⁾(inclusive education)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까움.

1) 일반논평4에서는 integration을 ‘통합’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한국 장애계에서는 Inclusive education (‘포용적 교육’)을 통상 ‘통합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inclusive education을 ‘통합교육’으로 지칭하겠음.

- 2021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9만 8154명이고, 그중 72.2%인 7만 866명이 '통합교육', 즉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 통합(inclusion)보다는 단순히 물리적 병합(integration)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22년 특수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중 4.0%에 불과했으며²⁾, 특수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수 년째 미달이 이어지고 있음³⁾. 일반학교의 장애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70,866명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배치된 보조인력은 9,14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보조인력 지원은 12.9%에 불과함. 이때문에 1학급당 또는 학생 1명당 수업지원 보조인력 1명의 배치가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교사가 한 학교 당 1-2명에 불과하게 배치되어 있어, 장애아동들은 장애 유형과 학년, 발달 정도에 상관 없이 특수학급에서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관련한 모든 업무가 특수교사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부모-학생-교사 간 사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높은 피로감과 낮은 업무 효능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해 '통합(inclusion)'은 커녕 물리적 병합(integration)에서조차 탈락되는 수많은 장애인이 분리 교육 형태-특수학교-를 오히려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⁴⁾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지금이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 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시스템 정비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적기임.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학생을 대상화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주의적 시각이 아닌,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임

2) “특수교육 재정,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뺏길음’, 교육언론 창, 2023.8.8.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

3) “특수교육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2만 5,924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원 수는 2만 4,962명으로, 962명이 더 필요” (발달장애인·학부모·교사 모여 “교육부, 통합교육 위한 개혁 나서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88>)

4) 상동



3. 적절한 생활수준

- NAP 초안, 그리고 발제자들 역시 주지하고 있듯,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의식주를 넘어 인간의 삶과 존엄성이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4차 NAP초안에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자 함

(1) 탈시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CRPD/C/KOR/CO/2-3)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

(...)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 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 할 것;
-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일반논평 5호-자립생활(CRPD/C/GC/5)

5. (...)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의존성을 지속화하고, 또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영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배제는 편견·분리·차별을 발생시키며, 이는 장애인 배제의 고리를 강화하는 부정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폭력·착취·학대를 유발한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에 대한 권리(19조)의 촉진 등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및 구체적 활동 계획은 권리의 향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의 감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비용효과적 장치이다.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CRPD/C/5)

6.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다.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 위반이기도 하다. 제14조에 반하여 손상에 근거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여 제14조 위반이기도 하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진정제, 안정제, 전기치료 및 전환요법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제15조, 16조, 17조를 위반한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자유롭게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키며, 이는 제15조, 25조 위반이다.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에서도 중단 될 수 없다.

9.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특히 탈시설 의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음. 위원회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탈시설 의제가 위원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최초로 약 6개월에 걸쳐 전 세계 대륙별 간담회를 시행, 장애인 당사자, 가족, 대표단체, 지원인력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까지 발표하였음⁵⁾. 위원회에서 이렇게 대규모 의견 수렴 메커니즘을 작동한 것이 처음이고, 한 주제로 일반논평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임

5) <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올해 8월, 제29차 세션에서 선택의정서에 따른 직권조사 사례 중 두 건(헝가리, 영국)에 대해 최초로 후속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두 국가 모두 직권조사 주제가 탈시설-자립생활이었음. 또한 같은 세션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국가들의 시설 수용 생존자, 대표단체, 지원인력들의 증언과 제안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권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유엔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즉, 탈시설은 더이상 한국이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핵심적 인권 의제임.
- 이런 맥락에서, 4차 계획에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보호’라는 과제가 포함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매우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모순적인 과제임. 따라서, 본 계획은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시설 내 인권’이 아닌,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과제가 제시되어야 함

(2) 활동지원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CRPD/C/5)

81.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노인 연령에 도달했다고 활동지원같은 지원 서비스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대신 당사국은 필요와 시간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을 늘려야 하며, 절대 시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 활동지원은 한국 사회에서 몇 안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로 꼽고 있는만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및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65세 도래시에도 서비스 유지 등의 정책 변화를 환영
- 그럼에도, 여전히 65세 이후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적 정책이 여전히 잔존해 있고⁶⁾, 발달/지적/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현행 체계에서는 사실상 활동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연령, 장애유형, 사회/

6) “‘65세’로 끊는 장애인 활동지원...“나이 든 게 죄인가요?””, KBS뉴스, 2023.6.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2285>)

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도입 계획이 필수적임

4. 의사결정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CRPD/C/KOR/CO/2-3)

27. 위원회는 후견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진전이 없고, 정신장애 및/또는 지적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없음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가능한 형태로 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CRPD/C/KOR/CO/1, para. 22)를 반복하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 논평 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의사 결정제도로 교체할 것; (...)

- 일반논평 1호-법 앞의 평등(CRPD/C/GC/1)

7.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법적 수행 능력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불평등한 방식으로 제약 받을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은 강제적인 대우를 허용하는 후견인 제도 (guardianship) 나 재산 관리자 제도 (conservatorship), 정신 질환 치료 법 등과 같은 대리 의사 결정 (substitute decision-making) 제도에 따라 차별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야에서 법적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거부당해 왔다. 장애인들에게 다른 충분한 법적 수행 능력을 사람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들을 철폐해야 한다.

(...)

13. 법적 수행 능력과 정신 능력 (mental capacity) 은 분명 다른 개념이다. (...) 정신 능력은 한 사람의 의사 결정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 12 조에서는 “정신 이상 (unsoundedness of mind)”과 기타 차별적인 꼬리표들은 (법적 정당성과 법적 대리권 모두를 포함한) 법적



수행 능력을 거부할만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제 12 조에 따라 인지되거나 실질적인 정신 능력의 결손은 법적 수행 능력을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후견제도를 비롯한 대체의사결정제도(substitute decision making)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기구들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임.
-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의사결정 권리를 저해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아니라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함

5. 기타 의견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 정책이 주로 출산과 양육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음. 교차적 차별 속에서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자주 대표되지 못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매우 자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장애 의제 주류화
 - 이주민, 난민, 탈북인, 아동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 내에 분명히 존재할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 필요.
 - * 일례로, 시설에서 36년 넘게 거주하다 탈시설을 시도하자 ‘불법체류자’신분이 되어 국적국으로 강제이송 위기에 몰렸던 대만 국적자 왕00님 사례(현재 개명)⁷⁾, 난민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민 미르의 사례⁸⁾ 등.
 - 교육, 문화예술 및 스포츠, 주거, 가족생활 등 다양한 의제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서 반드시 장애인 시민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에서 마련되어야 함

7) “국가가 36년간 시설에 입소... 미등록 체류 장애인에 범칙금 3천만원!”, 더인디고 2021.6.10. (<https://theindigo.co.kr/archives/21112>)

8)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 ‘난민’ 아동 미르가 활동지원 못 받는 이유, 비마이너, 2018.3.2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0>). 이후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완화하면서 난민 인정자에 한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음.

이주분야 : 인권이 중심이 되는 이민정책

■ 조 영 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두 분 발제자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주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4차 기본계획 과제 중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서도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상환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진전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내용이 빠져있을 정도로 ‘국가인권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평가에 공감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 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된 정책들이 좀 더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독일에서 추진되었던 ‘국가통합계획’과 같이 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을 줄여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향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4차 NAP의 이주분야 관련 평가

가. 총론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실제 향후 5년동안 규범력

있는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평가지표로 기능하고, 예산사업으로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와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2006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두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평가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과정에서 이러한 이행 촉구 의견표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대부분 소관 기관 스스로 개선 과제와 목표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후 평가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와 같이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외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5년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이고, 관련 분야의 국제적 기준이나 현황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안되는 각 부처의 정책과제들은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는 방향보다는 개별 부처에서 이미 하고있는 업무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제안되는 대안들의 수준과 충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국회나 정부에서 주류화되어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정책 전담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권고가 실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세부적으로 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질적인 권고 수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주분야 관련 세부내용 평가

(1) 고용허가제 전면개정 - 사업장 이동 제한 폐지

외국인 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



났습니다. E-9 단순취업 근로자 이외에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순환형태의 노동인력운용보다는 사회통합과 전문 기술을 가진 장기체류형태의 노동인력운용이 필요합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조율과 부처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책임기구 필요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적 처방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각 부처별로 제시하고 있는 인권정책 개선과제들 역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필요성이 높지만, 이러한 개별정책과제들이 잘 운영된다고 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정책위원회,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각각 법무부, 여가부, 노동부가 간사부서이지만, 이번에 제안된 NAP기본과제들을 보더라도 각 부처별로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별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이민정책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나 중복지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각 부처별 산발적 접근방식보다는 이주민의 체류에 맞춘 인권정책 필요

국가차원의 이민정책은 부처별 업무분야에 따라 나누기 보다는 이주민의 생애주기(출생-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년)와 이주단계(이주-정착-통합)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초기 이주단계에서는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착단계에서는 이주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서비스의 연계와 차별해소, 통합단계에서는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보편적 출생신고, 법 밖으로 밀려난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과 보육(보육료 지원), 교육(공교육 접근성 강화, 학자금 대출 등 제도적 차별 해소)과 자립(취업지원/연계), 사회안전망(재난안전 정보접근권, 건강보험제도 개선)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겪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적’이나 ‘피부색’ 등과 같은 단일한 유형의 차별이었다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대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차별요소들이 이주민들에게 더 쉽게 노출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과 대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넘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영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단일 차별시정기구를 만들고,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이념목표로서의 평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입법과 무관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정책과제를 위해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추진이 이번 4차 NAP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의 ‘북한인권’ 고찰 및 제언

■ 신 희 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I 탈북민 외 북한 관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 현재 제4차 NAP 초안은 이전 NAP처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에 ‘7. 북한이탈 주민(탈북민)’만 포함(pp. 345-361)
- 그러나 ‘국군포로’, ‘납북어류자’도 추가 필요
- 국군포로: 1990년대 이후 입국한 국군포로 80명 및 그 가족 430여 명은 탈북 전 북한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거나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등 탈북민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일반 탈북민과 구분 필요하며, 우리 정부가 대부분 전사 처리하여 송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아직까지 정부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도 없는 등 우리 정부의 인권침해 시정 노력 필요하므로 NAP에 추가 제언
- 납북어류자: 납북어류자와 그 가족은 과거 억울하게 북한 간첩으로 몰아 고문, 처벌, 차별을 받는 등 우리 정부와 사회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확인받았으며, 2007년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10조에서도 과거 국내 고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송환 노력을 게을리하여 2000년대 들어서야 진상조사 등에도 나섰기 때문에 NAP에 추가 제언
- ‘7. 탈북민’을 ‘7.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어류자’로 바꾸고 관련 내용 추가를 제언

II '국제적 기준' 및 '국내적 기준'(pp. 345-353) 추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2), 제3조, 제4조, 제7조 제1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호,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호, 제26조, 제34조 및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추가: 한국 정부에서 탈북민에게 보호조치 및 한국 국적 확인을 거부할 경우, 난민신청 등의 권리 확인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제6조(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추가: 많은 탈북 여성이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보호 필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추가: 국군포로 관련 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추가: 납북억류자 관련 법

III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관련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의 법적 근거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0. 3. 26.]

- 위 3개 조항 외 세부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보호조치의 기간’(90-120일)도 법제7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에 규정
-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 관련해서 조사(제47조-제50조),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제51조-제57조), 심사 및 이의신청(제58조-제61조) 등 법률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
-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 기준에 미달된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및 탈북민 우범선과 김현욱 씨 강제송환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재발 방지 위한 법제도 개혁 필요
- 2019. 11. 7. 살인 혐의를 받던 탈북민 우범선, 김현욱 씨 강제복송 사건을 계기로 최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정부법안으로 발의

[21215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4-20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J2F3S0M4M2Q0A1N5C5A8E5B6O8P0T3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 통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탈북자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 (2) 외교부장관의 재외 탈북민에 대한 국내 입국지원 근거, (3) 통일부장관이 국내 입국한 탈북자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통일부장관의 ‘보호의사 확인’ 규정은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적법」 제4조 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하는 것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하는 것처럼 보호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의사’를 부인할 여지를 넓히며, 특히 통일부장관이나 통일부 직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함.

- 실효적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탈북민의 중요한 법적 권리, 특히 (1) 강제송환금지 원칙, (2)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권리,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 필요
-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유엔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탈북민은 국내법상 ‘외국인’이 아니라 부 적용.
- 탈북민의 추방 위협에 관한 경고는 이미 10년 전 제기.¹⁾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NGO 제출 자료²⁾를 근거로 채택된 한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총괄 소견에서 “[탈북자들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독립적 심사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개인들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추방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 충분히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분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³⁾ 2019년 8월 동 위원회는 또 다시 NGO 제출 자료⁴⁾를 고려하여 한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 제출 전 쟁점 목록(LOIPR)의 쟁점 17에서 한국이 탈북자들이 “추방 결정을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⁵⁾ 동 위원회는 2023년 10월 한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

1) 황필규, “어떤 정당성도 없는 6개월 강제구금”, 시사인, 2013. 5. 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8>

2) Human Right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NGO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List of Issues for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4 (14 Jan 2015), pp. 38-39 and 54-5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O%2FKOR%2F19216&Lang=en ;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NGO submissio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115th Session, 19 October 2015 – 6 November 2015, Submitted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83 NGOs) (22 Sep 2015), p.2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CSS%2FKOR%2F21718&Lang=en

3)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3 December 2015, paras. 36-37, <https://undocs.org/CCPR/C/KOR/CO/4>

4) Joint NGO 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 Lists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Republic of Korea: 126th Session submitted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97 NGOs) (May 2019), p.12,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CPR%2FICS%2FKOR%2F34924&Lang=en

5) HRC,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QPR/5, 21 August 2019, para. 17, <https://undocs.org/CCPR/C/KOR/QPR/5>

- 「난민법」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 필요
-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총괄 소견에서 탈북자들이 변호인에 대한 접근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피구금자들이 전체 구금 기간 중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신문 중에 변호인을 허용할 것”을 권고.⁶⁾ 2019년 8월 동 위원회는 다시 한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 제출 전 쟁점 목록(LOIPR)의 쟁점 17에서 “전체 구금 기간 중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탈북자들의 기본적 법적 보호책이 보장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보고 요청.
-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및 헌법 제12조 제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임시보호조치의 기간’과 임시보호 절차 등은 ‘법률’로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현행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90일-120일까지 ‘임시보호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므로 법원의 적부심사 도입 필요.
- 합동신문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형사절차로 전환하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 고지하고 진행 제도화 필요

IV 사형 존치국으로의 추방, 인도 등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18-2022)은 생명권 관련 ‘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에서 국내 사형제 폐지 여부만을 언급.
- 한편, 한국은 미국⁷⁾, 중국⁸⁾, 북한⁹⁾ 등 사형 존치국으로의 추방 및 범죄인 인도를 계속

6)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3 December 2015, paras. 36-37.

7) 강지남, “미국 보내면 사형... 제발 내 아들 살려주오”, 주간동아, 2008. 4. 2.,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4713/1>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23-2027)에서는 사형 존치국으로의 추방, 인도 등 문제도 '사형제도 개폐 검토'에서 언급 제안
- 2002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로저 저지 대 캐나다(Roger Judge v. Canada) 사건에서 “[사형에 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2항에서 제6항의 예외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당사국만이 원용할 수 있다. 사형 폐지국의 경우, 사람을 실존하는 사형 집행의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형 폐지국은 개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 이들을 사형 집행의 방지 보장 없이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자국 관할권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없다”고 판단.¹⁰⁾
-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9)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형 가능성 있는 추방, 인도 등은 자유권규약 제6조 위반.

V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관련

- 2019년 7월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발생한 사건인데, 이후 통일부는 전국 각 행정단위에 탈북민을 위한 전용 인력을 늘리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행정 인력에서 담당 구역 거주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낭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엄연한 한국 국민인 국내 탈북민을 ‘지역 주민’이 아닌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음.¹¹⁾

8) 김기윤, “조선족→한족→한국인 신분 세탁한 30년 전 중국 공안 살해범 송환”, 동아일보, 2022. 5. 1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18/113468246/1>

9) HRW, “South Korea Investigates Forcible Return of Two North Koreans: Inquiry Should be Credible, Impartial, Independent”, 22 July 2022, <https://www.hrw.org/news/2022/07/22/south-korea-investigates-forcible-return-two-north-koreans>

10) HRC, Roger Judge v. Canada, Views, Communication No. 829/1998, para. 10.4, <https://undocs.org/CCPR/C/78/D/829/1998>

11) “북한이탈주민 업무,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월간조선 2022. 5. 23., (“그러면서도 윤 소장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60%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통일부가 이러한 개편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윤 소장은 “행안부로

VI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 성상환 교수님 지적대로 국내에서 일반인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이민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보다 나쁜데 “⑧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처럼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도 별도 항목으로 언급 제안

VII 북한인권 조사기록

- ‘④ 국외입양인 인권개선과 지원’에서의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처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현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조사기록은 국내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억류자들에게 알 권리를 포함한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일환.
- 따라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작업의 진척사항도 NAP에 기재할 것을 제안.

정착지원 업무가 이관될 시 북한이탈주민 전용시설 및 기관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지역사회 행정, 복지, 문화 시설 이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위험 가구에 대한 대응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5354&Newsnumb=20220515354

Section

02

자유권 분야

발제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자유권 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준 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자유권 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준 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 시작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자유권 분야는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첫 번째 장에서 서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별적 자유권과 세부적인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권도 자유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자유권 분야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권을 따로 분리시키는 표현방식은 생명권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인권(human rights)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인간존엄성의 확인과 실현은 **자유권과 평등권**의 보장을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한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① 일반적 권리와 ② 개별적 권리로 구분되며 개별적 권리는 다시 헌법이나 국제법규에 ① 열거된 권리와 ②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일반적 권리와 개별적 권리는 보호법익의 일반성이나 추상성에 따라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일반적 권리를 구체화한 개별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적 권리는 개별적 권리로 독립될 수 없는 권리의 근거로서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 보충적 권리로도 불린다.

현행 헌법은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0조), 또한 논리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의 권리이지만 모든 차별사유나 차별영역을 망라하는 **일반적 평등권**(또는 일반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일반적 자유권을 구체화하는 **개별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사유나 차별영역에 따른 **개별적 평등권**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열거되지 않았으나 헌법적으로 인정되어야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1항). 대표적으로 헌법은 생명권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별적 자유권과 개별적 평등권은

각각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가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도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일반적 자유권과 일반적 평 등권, 개별적 자유권과 개별적 평등권, 그리고 열거된 개별적 자유권과 평등권 및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자유권과 평등권의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자유권	세부적 과제
1. 생명권	- 사형제도 - 자살예방
2. 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제도 -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수용자에 대한 처우 포함) - 성충동 약물치료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외국인 장기보호 - 인신보호법제
3. 안전권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다중이용시설/서비스 소비자의 안전 - 재난과 재해 예방 - 안전사고 - 경찰 수사권 남용
4.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국가보안법
5. 표현의 자유	- 방송 소외계층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6. 결사와 집회의 자유	- 아동/청소년의 집회/결사 자유 보장 - 감염병과 집회/결사의 자유 - 집회 방해 행위
7. 사생활의 자유	- 보안관찰제도 -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 침해 - 신상정보등록제도 -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장치 처리절차 -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보인권보호
8. 거주와 이전의 자유	- 교통약자 이동권 - 도서주민 이동권
9. 인격권	- 전자감독(전자감시 장치부착) 제도
10. 권익피해구제를 위한 권리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구제 - 군 장병 인권침해 구제 - 집단민원



구체적 자유권	세부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경찰활동 - 군내 성폭력 피해자 권리구제 - 과거사 청산 - 소비자 피해 권리구제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확대
11.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확대

II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적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이슈들

1. 생명권의 문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개별적 자유권인데 현행 헌법은 명목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별적 자유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헌법학자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인하지 않는다. 생명권은 인간존엄성의 측면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자유권으로서 헌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권은 대표적인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꾸준히 비판되고 있는 **사형제도**는 명백하게 가혹하고(cruel) 비인간적(inhuman) 형벌이라는 점에서 고문과 부당한 처우 및 처벌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된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사형제폐지가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가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른바 ‘신중론’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 생명권은 국가의 객관적 생명보호의무와 늘 한 쌍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제3자(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호의무’라고 부른다.¹⁾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적으로 제3자의 기본권침해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형사입법에 관한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중단하는 자살행위도 기본권보호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자유권으로서 생명의 유지에 관한 권리를 넘어서 생명의 중단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권리로 이해하면 생명권에는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생명권 이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독립적인 헌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개별적 자유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자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²⁾ 특히 불치의 질병이나 말기 또는 임종 단계에 있는 질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존엄사에 관한 권리)는 인간존엄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권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도 한국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아 외국에 나가 이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관점에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 이미 **낙태**의 정당화사유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자보건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³⁾ 정부는 임신기간을 삼등분하여 절대적 허용기간과 상대적 허용기간 및 절대적 금지기간으로 구분하는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 허용기간과

1) 예를 들어 현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2상, 91, 103쪽: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2) 현재 2009. 11. 26. 2008헌마385, 판례집 21-2하, 647, 660쪽: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3) 현재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이하 참조.



관련하여 상담절차와 같은 후견주의적 접근방식에 반대하거나 절대적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여성차별의 철폐라는 관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

신체의 자유는 거동(motion)의 자유가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인신구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현행 법제에서 수용과 보호를 구분하고 있지만 양자는 모두 인신의 구금을 통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래도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교정시설의 인신구금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집행되겠지만 외국인보호 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설도 본질적으로 인신구금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시설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는 점이다.⁴⁾ 교정시설에 의한 인신구금이 아니더라도 보호의 이름을 가진 구금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의 경우에 두 가지 중요한 인권이슈가 있다. 첫째는 **과밀수용의 문제**로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밀수용과 관련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물론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조금 더 확대하면 전반적인 수용환경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가 수용시설의 공간적 문제라면 수용시설의 빛과 조명, 통풍, 침구, 온수제공, 냉난방, 운동시설 등과 같은 환경적 문제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수용시설의 개인적 공간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1인당 최소면적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⁵⁾

교정시설의 두 번째 인권이슈는 **의료조치의 문제**다.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조치(의료지원)가 필요한

4) 현재 2023. 3. 23. 2020헌가1등, 공보 318, 511 참조.

5)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이준일, 과밀수용 판단의 법적 근거와 기준, 헌법논총, 제33집, 헌법재판소, 2022, 9쪽 이하 참조.

수용자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교정시설 내 의료지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외부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외부의료기관의 의료적 처치를 위한 형집행정지결정의 기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⁶⁾ 특히 최근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형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의료시설에 전문의의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3. 안전권의 중요성

안전권 또는 안전에 관한 권리는 최근에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잇따른 대형 참사와 전지구적 전염병,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안전권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타인(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전권의 핵심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주로 테러나 핵발전소의 방사능유출, 환경침해 등이 문제되었다.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안전권의 전통적 의미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재확산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이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안전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안전권은 더 이상 기본권보호의무의 관점에서 기본권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형사입법적 대응으로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안전에 관한 사전적 및 사후적 제도, 절차, 지원 등을 포괄하는 입법적 대응의 수준으로 안전권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기상이

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준일, 형집행정지결정권의 한계로서 기본권 및 인권, 법과 사회, 제71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171쪽 이하 참조.



변(이상기후)이 발생하는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도 안전권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안전권뿐만 아니라 환경권 및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권이슈가 되었다.⁷⁾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대응, 그리고 자연재난을 당해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 등 다양한 인권이슈들을 안전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방안인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만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례들의 등장을 주목해야 한다.

4.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핵심적 인권이슈이었지만 대체복무제의 도입으로 뜨거운 논쟁은 다소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의 공정성은 단순히 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자체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한 귀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직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가능성의 문제를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입법적 대응을 참고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7)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준일, 기후위기와 헌법 -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 관점의 접근, 공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77쪽 이하 참조.

5.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언론기관)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자유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고전적 기준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혐오표현(hate speech)**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다. 혐오표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의 문제도 발생시키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도 명시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헌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차별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괴롭힘(harassment)의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괴롭힘의 일종인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명시적으로 혐오표현을 차별로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집회와 옥외시위의 문제가 다시 인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진행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옥외시위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⁸⁾을 한 이후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야간, 즉 해가 진 후(일몰 후)부터 해가 뜨기 전(일출 전)의 시간대에서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간대는 옥외집회나 옥외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실시했다. 야간 옥외집회나 옥외시위와 관련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성소수자의 집회 및 행진과 관련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행진은 사전에 신고가 되어 금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 의한 소음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

8)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



의 자유와 환경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한쪽의 기본권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7. 사생활의 비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관한 권리의 핵심은 사생활의 비밀, 곧 프라이버시(privacy)이다. 비밀의 본질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공개의 거부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해서는 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된다. 최근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처리를 넘어서 미리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안면이나 음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알 권리의 침해가능성 및 편향적인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가능성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능성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⁹⁾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종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이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거주와 이전의 자유의 새로운 의미

신체의 자유가 거동의 자유인데 비하여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확산 시기에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감염병 상황은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요구나 사실상 강제집종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등의 다른 기본

9)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권이슈에 대해서는 이준일, 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헌법적 권 차원의 대응,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2, 347쪽 이하 참조.

권을 제한할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인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9. 인격권의 의미

인간이 존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은 행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적 상태의 자유도 포함한다. 인격권은 바로 이러한 인격적 상태, 즉 인격적 속성과 인격적 상황과 관련된 자유를 의미한다. 생명권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도 인격권의 한 유형이며 사생활의 비밀도 인격권의 또 다른 유형에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은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도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다양한 개별적 인격권이 도출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권이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도 각각 개별적 인격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권은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를 확장하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가능성을 항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인격권을 이유로 과도한 제한이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인격권도 여전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피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다수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과 멸시 등의 부정적 표현에 대하여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0.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는 '절차권(절차적 권리)'으로 부를 수도 있다.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는 권리구제를 위한 조직과 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군대 내 인권침해의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장병의 인권과 지휘관의 지휘권이 충돌하는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문제



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축소로 해결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11. 참정권

참정권은 좁은 의미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이해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국가에서 정치적 참여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참여권 제한은 정치참여가 인권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헌법적 원칙으로 인용되는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은 공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의 금지로 이해되어야 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원칙적 금지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자나 수어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투표소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III 맺는 말

최근에 한국사회에 등장한 많은 인권이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시적인 방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형참사의 반복으로 인한 안전권의 문제이고, 둘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안전권과 환경권의 문제이며, 셋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다.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권의 이슈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비록 5년 단위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ection

02

자유권 분야

발제
2



제4차 NAP 공청회 발제문(자유권)

이 상 경(서울시립대학교 법전문 교수)

제4차 NAP 공청회 발제문(자유권)

이 상 경(서울시립대학교 법전문 교수)

I 서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이다.

2. NAP의 수립 배경 및 의의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인권협약 등의 인권 원칙을 각 국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국가의 책무를 국가정책 추진에 투영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한다. 아울러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

내인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정부 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 정책 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이 되는 해인 1993년, 비엔나에서 유엔 주최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제71조는 각 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 인권NAP의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권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협의한바 있다.

정부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40호, 2015. 3. 23., 일부개정)을 수립하여 정부 내 인권NAP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하였으며, 2022년에 제3차 인권NAP가 종료되므로 제4차 인권NAP를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¹⁾

- 제1차 인권NAP(2007~2011) : 인권위 권고(2006) ⇨ 정부 수립·시행(2007)
- 제2차 인권NAP(2012~2016) : 인권위 권고(2012) ⇨ 정부 수립·시행(2012)
- 제3차 인권NAP(2018~2022) : 인권위 권고(2016) ⇨ 정부 수립·시행(2018)

3. 제4차 NAP권고안의 구성 및 특징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NAP 권고는 권리별, 권리 주체별로 약 272개의 과제와 그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내용이 방대하였으나, 제4차 NAP 권고는 우선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2023~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적정 수의 핵심 인권 과제들을 선정하였다.²⁾

제4차 NAP권고안의 대주제는 다음과 같다:

- I.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 II.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과 존중받는 삶 실현
- III.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1)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2면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7면 참조.



- IV.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 V.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 VI.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이러한 제4차 NAP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제4기 NAP 중 자유권 관련 부분을 아래에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II 제4차 NAP 자유권 분야별 검토

제4차 NAP는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대주제 아래 11개의 세부적인 인권 항목으로 분류하여³⁾ 각각의 인권 표지에서 국제기준, 국내기준, 현황, 제4차 기본계획 과제 등의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1. 생명권

생명권은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권리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기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임. 누구든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생명권을 존중 하고 보장하고, 생명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1)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 ○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을 통해 사형집행 중단의 공식화 ○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사형제 공식 폐지	1) 사형제도 개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지속적 확인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3)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으로 분류된다.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대체형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형제 폐지의 법제화 노력 강화 2) 국가 자살예방 시스템 강화 ○ 자살예방센터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단계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예방 서비스 적시 제공 ○ 경찰·소방관 및 지역사회자살예방센터를 위한 자살시도자와 자살위험군 관리업무 매뉴얼 등 보급 및 교육 실시 ○ 마음안심서비스 확대 운영 등 프로모션 활동,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상담전화 등을 통한 심리지원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자살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자살 실태조사 •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p>평가:</p> <p>1)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마지막 집행 후 20년이 지난 2007년 12월 30일부터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한바 있으나, 사형제도 존치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 중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을 적절한 것임. 다만, 인권위의 2018년 조사⁶⁾에서, 국민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나 집행이나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59.8%)과 사형제도를 반드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19.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절한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 등의 여부를 물었을 때 66.9%가 사형제 폐지를 동의하는 등 대체형벌 도입을 통한 사형제도 폐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⁴⁾</p> <p>2) '21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13,352명(10만 명당 자살률 26.0명)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20년 대비 소폭 증가(1.2%), OECD 국가(평균 11.1.명) 중 최상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25.~'26.)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안전망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p>	

4)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23면 참조.



2. 신체의 자유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p>1)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형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p>2) 구금·보호 시설에서의 인권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강화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개선 	<p>1) 인신구속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구속 관련 형사절차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속 •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한 ‘인권보호부’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등 차단 노력 지속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기조 유지 <p>2)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현대화 지속 추진 •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개축 지속 추진 <p>3)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p> <p>4)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개선</p> <p>5)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개선</p> <p>6)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p> <p>7)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p> <p>8) 인신보호법제 활성화</p>
<p>평가:</p> <p>1)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의 적법절차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음. 기존의 수사 범위에 포함 되지 않았던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사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디지털 증거 원격지 압수·수색 절차에서 영장주의 등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주거수색은 사전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영장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등 결정)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3차에서 이행하지 못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실질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형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구금·보호 시설에서의 인권 및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개선

- '16년 헌법재판소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이후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개축을 통해 수용 비율을 낮추고 있음. 법무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58㎡ 또는 3.3㎡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6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01.3%로, 2019년 4분기 113.8%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도시(인천, 대 구, 대전, 광주 등) 구금시설 수용률은 114.4% ~ 135.1%로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수용률이 100% 미만인 구금시설에서도 여성 수용자, 대도시 구치소 미결수용자를 중심으로 수용 구분에 따라 과밀수용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수용률 100% 초과하는 지역 및 수용 구분에 따르는 과밀 수용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할 절차가 없다는 이유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가9 결정)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등이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17년 12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18. 1. 1. 시행)한 것과 같은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절하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에 따라 치료명령 집행개시 6개월 후 이행상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임시해제 신청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방향임

3. 안전권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권고안은 안전권을 독립적 영역으로 다루었는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83면 이하 참조.

6)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38면 이하 참조.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p>1)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에 포함 ○ 재난 원인 등의 규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독립된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 ○ 재난 복구 및 대책 관련 피해 당사자와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 ○ 재난 발생 시, 생존자 가족·유가족 등 피해자 분류별 보호조치, 인도적 시신 수습 및 인계, 신속하며 2차 피해 없는 배·보상 시행 등 실질적인 재난 발생 후속 조치 마련 ○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3)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4)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5)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6)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7)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8)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 해결추진 9)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제 구축 10)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11)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p>평가:</p> <p>1) 법무부 제4차 NAP 과제는 신체의 자유에서 논의되어야 할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의 과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의 과제를 안전권에 포섭시키고 있어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자연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상시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재난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권의 개념 및 포섭 범주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p> <p>2)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는 내용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항에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는 내용 등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제1차와 제2차 NAP에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신체의 자유 부분에 포함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제3차 NAP에는 달라진 안전에 대한 상황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생명권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또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와 같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고 권고하였고, 제4차 NAP 권고안에서도 생명권과의 관계성 아래에서 안전권에 관한 권고가 들어 있음. 따라서 안전권에 관한 포섭 범주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 부처·기관의 대책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함</p>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1)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1)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법 적용 지속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 적극 고려 •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국가보안법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평가: 1) 「국가보안법」 각 조항들 중에서도 특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자 근대 시민형법의 최고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양심·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나머지 조항들은 이상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에 대해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항으로서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의율이 가능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13건(헌법소원 11건, 위헌법률심판 2건)이 심리 중에 있으며, 주로 제2조(정의) 또는 제7조(찬양·고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건의 위헌 법률심판(대전지법, 수원지법)은 모두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 ‘국가보안법 전부폐지안(2개)’이 이미 발의되어 있음.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의 경제력·군사력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미디어 매체들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북한의 부정적 실상 및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 상황이므로 북한의 찬양·고무 대상으로서의 위험성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보안법」규정은 개정 내지 폐지가 필요함	

5. 표현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모든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모든 자유민주적 사회를 위한 초석을 구성하므로 이를 제한할 때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정보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1) 정보통신망법 상 임시조치 삭제 2) 언론·방송 심의기구의 중립성 강화 ⁷⁾ 3) 공직 선거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확대	1)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 강화 •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혁신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기반 조성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임시조치 후속절차 마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정보통신망법」개정안 마련 추진 3)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p>평가:</p> 1)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은 NAP권고안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 2) 정부는 인권NAP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임시조치 삭제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정책으로 포함시켰으나, 법률개정안 발의 등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및 2020년 ⁹⁾ 각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2020년 결정의 3인의 반대 의견에서는 위헌성을 명확히 지적함.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2항을 개별적 판단에 따라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나 게시물 복원 요구에 따른 조치를 신설, 정보계재자의 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복원했을 경우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¹⁰⁾ 3)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안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제68조),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제93조),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제103조)]에 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시 입법 지원 과정은 적절함	

7)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79면 이하 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72면.
 9) 현재 2020.11.26. 2016헌마275 등
 10)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78면.

6. 결사·집회의 자유

(1) 제4차 NAP 권고 - 개선 방향	(2) 제4차 NAP 과제
<p>1) 감염병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요건 및 규모의 명확화 및 집회 등 영상녹화방식의 채증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기준 마련 ○ 과학과 방역에 근거한 집회·시위 세부적 적용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 마련 	<p>1)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참여 기반 마련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등 지원 •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청소년참여포털, youth.go.kr/ywith) 기능 개선 - 정책제안 공모전, 청소년원탁회의 등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창구 운영 <p>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통과 추진(~'27.) <p>3)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단체 집회권의 폭넓은 보장을 위한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22. 5. 18.~11. 14.) 결과를 통해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 부여 △분할개최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중복 집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중복집회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 3항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시, 개정 필요성 제시
평가:	



- 1)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다수인이 모이는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특히 집회·시위를 주최하려는 측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년 8월)과 관련 하여, 감염병 확산 지역 및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제21조가 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2020. 12.).¹¹⁾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과제는 적절함
- 2)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는 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
- 3)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는 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

7. 사생활의 자유

(1) 제4차 NAP 권고	(2) 제4차 NAP 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접근권]</p> <p>1)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¹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관련, 대상 범죄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감청이 요구되는 범죄로 축소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도 범죄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소 ○ 「통신비밀보호법」 중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죄로만 한정 ○ 「전기통신사업법」 중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하여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보충적·예외적 요건에 한하여 요청¹³⁾ <p>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형사사법 관 	<p>1)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p> <p>2)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요건과 절차 철저히 준수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추진^(23.) <p>3)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p> <p>4)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또는 하위법령 개정 검토 • 경찰청 자체규칙*을 통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 시 원칙 및 절차 규정(제22조

11)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75면.

<p>련 시스템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 또는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관 및 폐기 기준, 정보주체의 공개·열람·수정 요구에 대한 처리원칙 등 개인 정보보호 제반원칙 수립 및 관련 법령 반영 ○ 형사사법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체계화 ○ 형사사법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p>3)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제도 정비</p> <p>4) 디지털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강화</p> <p>5)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p> <p>6)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 방안 마련</p> <p>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p>	<p>제1항 및 제3항), 수사 보완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수사관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관련 세부 절차 통일 지속 추진 <p>5)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당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안 제시 등 입법 지원
<p>평가:</p> <p>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자유는 넓게는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과 자유도 함께 포함된다. 아울러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적 보호는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차 NAP 과제가 설정된 것으로 보임</p> <p>2)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영상 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법제를 정비하고, 생체 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인권NAP를 수립한 바 있음.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감염병 상황에서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공유되거나 CCTV를 통해 무작위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은 민감한 개인의 정보 보호의 문제와 취약계층의 공공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제4차 NAP 권고안의 내용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면인식 등의 생체 정보 등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이행되어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꾸준히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¹⁴⁾</p>	



8. 거주·이전의 자유

(1) 제4차 NAP 권고	(2) 제4차 NAP 과제
1)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p>1)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 1.)을 통해 보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법」하위법령 정비(‘23. 1.)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 확대 • 특별교통수단 이동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 7.)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24시간 운영, 광역권 이동)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 추진 •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활동 및 교통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 생활편의시설(의료·교육·공공기관)과 교통시설(터미널·철도역)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거점과 배후 마을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 활력 제고 <p>2)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주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주민 차량 생산지, 연료, 크기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확대(‘23.~)

12)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중에서 실시간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보충성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18.6.28. 2012헌마191)하였으며, 소위 ‘기지국 수사’와 관련하여 강력범죄나 국가안보위협범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18.6.28. 2012헌마538)한바 있다.

13)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56면.

14)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53면.

	<p>* 지원 차량 생산지 기준 폐지, 차량 연료 종류 확대(환경친화적 차량 포함), 지원 차량 크기 제한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주민의 부담액이 육지대중교통 수준(≤ 3,500원)으로 낮춰지도록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금 상향 추진
<p>평가:</p> <p>1)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여전히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함. 우선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의 종류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는 시내버스 일반형, 농어촌버스 일반형, 마을버스만 포함될 뿐, 광역 급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등은 제외되었음(*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①광역급행형 ②직행좌석형 ③좌석형 ④일반형으로 구분됨). 또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었음¹⁵⁾</p> <p>2)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은 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p>	

9. 인격권

제4차 NAP	
<p>1)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치의 성능개선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 편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형 전자장치의 조기 보급 및 지속적인 전자장치 성능개선 추진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전문 인력 확보 및 더 많은 외부 자원 활용 등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부착명령 임시해제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위험성에 따라 임시해제 적극 실시 	
<p>평가:</p> <p>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p>	

15)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45면.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재판에서 평등할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 보호의 핵심 요인이자 법치 수호의 절차적 수단이다. 적절한 법 집행의 보장이 핵심이며, 소송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의 보장 또한 필요하다.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라는 분류에 다양한 인권적 쟁점을 포함시킨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나 전통적인 자유권의 분류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의 분류 혹은 범주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1) 제4차 NAP 권고	(2) 제4차 NAP
1)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방안 마련 ¹⁶⁾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2) 군 장병 인권보호 3)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4) 회복적 경찰활동 5) 군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보강 6)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7)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소비자안전기본법(가칭)」제정(안) 마련(‘23.) •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24.)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기능 개선(‘27.)

평가:

- 1)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2021년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함
- 2)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및 트랜스젠더가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⁷⁾
- 3) 미국의 경우 2010년 의회가 군복무를 하되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게 한 Don't Ask Don't Tell 정책¹⁸⁾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도록 군사통일재판법을 개정하였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시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바 있음¹⁹⁾
- 4) 나머지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부분은 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

11. 참정권

(1) 제4차 NAP 권고	(2) 제4차 NAP 과제
1)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 이사회 의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를 통한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지속 추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 시행('23.~'27.)을 통하여 입직단계부터 성비 불균형 완화 도모 - 정책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 지속 관리 2)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16)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99면 이하 참조.

17)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96면.

18) 자세한 것은 이상경, 동성에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소위 “불문부답법”에 관한 미국 연방판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0), 269면 이하 참조.

19) 대판 2022.4.21. 2019도3047.



<p>록 법 개정²⁰⁾</p> <p>2)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정책 지속 추진 <p>3)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지원 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2%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p>4)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운영 및 지역인재 7·9급 선발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p>평가:</p> <p>1) 민주적 대표성은 사회 구성에 비례하고 반영할 때, 충실히 작동되는 것으로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와 범위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됨²¹⁾ 여성 대표성의 취약성은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2018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건해에서 2016년 기준,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17%(115)에 불과한데, 이 중 총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53.2%(116)인 점, 이에 비해 총 253석의 지역선거구 의석에서는 10.3%(117)에 불과한 점에 우려를 밝혔음²²⁾</p> <p>2) 정부는 성인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하고, 성별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등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 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인권NAP에 포함시킨바 있음</p> <p>3)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등은 NAP권고에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NAP에 포함시킴</p>	

20)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98면.

21)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95면.

22) 국가인권위원회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년 7월), 196면.

Ⅲ 결론

이상에서 제4차 NAP의 자유권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제4차 인권NAP 권고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였다. 종전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인권NAP 권고는 권리별, 권리 주체별로 약 272개의 과제와 그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내용이 방대하였는데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분류상 권리별 그리고 권리 주체별로 전체 100개의 핵심과제로 추려서 제안하고 있으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권의 일반적인 분류체계에 따르지 않았고, 새로운 인권 상황에 적응하여 그에 맞게 필요한 부분의 핵심과제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NAP도 중요한 권고를 수용하고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을 잘 제시하고 있다. 제4차 NAP는 자유권을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자유권 분류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고, 평등과 차별금지별도의 분야로 설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권적 쟁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포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4차 NAP는 2023~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적정 수의 핵심 인권 과제들을 선정하고 핵심과제가 인권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고 있으며, 제4차 NAP 과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또한 인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범정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시된 제4기 NAP의 초안은 자유권 분야의 중요한 이슈를 선도하면서도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잘 구성되었다.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진지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더욱 완성된 모습이 될 것이다.

Section

02

자유권 분야

토론



-
- ❶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❷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❹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후 5년간의 인권정책,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조 소 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각국 인권NAP 수립 권고 이후로, 호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서의 인권NAP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매 5개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인권NAP을 수립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3차 인권NAP이 종료되어, 제4차 인권NAP 수립을 위한 이런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4차 인권NAP 수립촉구성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 종료된 제3차 인권NAP을 이어가는 제4차 인권NAP의 수립 및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연상황이 이번 처음은 아니어서, 제3차 인권NAP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 권고(2016) 후 2년이 지난 후의 수립·시행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인권NAP의 수립시한을 지켰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2023년 수립 및 시행시한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이렇게 늦은 걸음을 시작한 것에 대한 우려였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적이건 국가적이건, COVID-19의 장기터널을 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경험치와 예상치를 벗어난 여러 상황들이 가져온 사회적 불안감과 우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권리보장 그 자체 보다도 보장의 현실이 실질적인 것인지 되문게 하고 있음도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선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2023~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적정 수의 핵심 인권 과제들을 선정한 제4차 인권NAP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제4차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와 과제의 내용 중, 자유권 분야에 관한 발제의견을 주신 두 분 교수님의 탁월한 해안과 분석내용을 보면서, 기본권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공부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발제 내용에 대한 평가나 반론을 이야기 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고려해 볼만한 작은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에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준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드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 이후, 학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별적 기본권성 인정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객관적 헌법원리 또는 가치의 수준 뿐만 아니라 개별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인권NAP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다음으로 현대정보사회에서 정보보호의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는 항상 논의되는 주제인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온라인상의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제도의 미비점이 수정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낙태 허용의 문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Roe v. Wade 판결을 파기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고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지요? 낙태의 허용으로 인한 관련 법률들의 유기적 개선이 같이가야 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의사 본인의 자유권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낙태시술거부를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 것인지, 낙태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영역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이상경 이사장님께서도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모든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4차 인권NAP 과제의 실질화를 위한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먼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환경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전의 고용·피고용의 관계 구분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강화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공기업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업의 경우를 국가가 나서서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시장경제구조 하에서 위헌의 의심 없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위탁·보호소년의 인권보호 현실은 현재의 현실이 교정될 수 있는 실제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되돌이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국가예산과 인력, 감독의 유기적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



해, 재난, 치안 등 안전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즈음에 안전권의 개념 및 포섭 범주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있는데 없는 그런 현실이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적 상황들 중 다수는 평상적인 것들이 아니어서 예상이 불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 및 대책을 명확화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성과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확대를 과제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제 모습은 적잖게 다른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펜스룰의 경우처럼, ‘그들에게 여기만 쥐버리자’ 혹은 법제에 의한 특권 향유자라는 다수의 시선에 위축감을 갖게되거나 단지 여성이거나 지역인재라는 사실만으로 그들만의 기회를 보장받게 된 건 아닌 가라는 경우들이 그것입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장치들에 대해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지요?

두분 교수님께 여쭙본 이런 고민들은 두분께 어떤 정답을 요청하는 거라기 보다는, 적어도 제4차 인권NAP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에서 정부가 경청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언드린 내용들입니다. 제4차 인권NAP이 선언적 의미만으로 혹은 추상적인 가이드라인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발제해 주신 두분 교수님, 어려운 과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유권 분야에 관하여

■ 홍 관 표(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NAP”라고 함)의 제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에 따르면, 제3차 NAP의 시행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2022년에 그 이행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4차 NAP를 수립하도록 예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는 2022. 7. 11. 제4차 NAP 권고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제4차 NAP를 권고함
 - 인권위는 제1차~제3차 NAP 권고안에서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우선 집중하던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제1장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2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과 존중받는 삶 실현’을 배치했고, 추진과제도 6개 대주제, 100개 핵심 인권과제로 정리하였음
 - 다만, 인권위가 제4차 NAP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제3차 NAP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제3차 NAP 권고와 그에 대한 정부 이행에 대한 추상적 평가에 그침)
- 법무부는 2022년 4월~8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3차 NAP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다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함
 - 2022년 이행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이행평가에서 제3차 NAP 총 272개 과제의 이행률은 98.16%로 나타남(과제완료 21개, 정상추진 246개, 추진지연 3개, 기타 2개)
 - 추진지연 과제 :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증진(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인신보호법제 활성화(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II 제4차 NAP(안) 자유권 분야의 구성 체계

- 제4차 NAP(안)는 제2부 정책과제 중 ‘I.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 11개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기본적 권리 및 자유는 ① 국제적 기준, ② 국내적 기준, ③ 현황(국내 현황, 제3차 NAP 이행 경과), ④ 제4차 기본계획 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NAP와 비교해보면, 제3차 NAP 제2부 정책과제 중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제외하고, I.~IV.를 종합하면, 제4차 NAP(안) 제2부 정책과제 중 I.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제3차 NAP 제2부	제4차 NAP(안) 제2부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I.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이전의 자유 9. 인격권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이전의 자유 9. 인격권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2. 참정권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 참정권

- 인권위의 제4차 NAP 권고안과는 2부 제4차 인권NAP 정책 과제 권고 중 ‘I.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제4차 NAP(안) 제2부 정책과제 중 I.이 비슷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2부	제4차 NAP(안) 제2부
1.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1. 생명권·안전권 2. 차별금지·평등권 3.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접근권 5.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6. 구금·보호 시설에서의 인권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이전의 자유 9. 인격권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 참정권

- 제4차 NAP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서야 인권위 NAP 권고안과 정부의 NAP(안)이 체계상 근접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인권위 권고의 이행을 확인하거나 권고안과 최종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체계를 고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III 제4차 NAP(안) 자유권 분야의 개별적 검토

1. 생명권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생명권에 관하여는 제3차 NAP에서 3개 과제가 제4차 NAP(안)에서 2개 과제가 되었으나, ‘자살 예방 체계 강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자살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의 1개 과제로 병합되어 내용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됨

나. '사형제도 개폐 검토'에 관하여

-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2007년 5월 제1차 NAP를 수립할 당시부터 '사형제도 존치 여부 검토'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제4차 NAP(안)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인권위는 제4차 NAP 권고안의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며, '사형제 폐지의 법제화 노력을 강화'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1차 NAP의 세부 추진과제에도 포함되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향후 5년 동안의 과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4차 NAP(안)의 제3차 NAP 이행 경과와 관련하여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법령 분석으로 '18. 12. 기준 총 24개 법률의 102개 조문을 표기하고 있는데, 2022년에 종료된 제3차 NAP이 이행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임
 - ※ 개인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기준 총 25개 법률의 125개 주문으로 확인됨(미수범 28개 조문 포함)
 -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찬성 표결한 시점도 2020. 12. 16.과 2022. 12. 15. 두 차례였으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함

다. '자살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하여

-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2023. 4. 14.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하였으므로,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4차 NAP(안)의 해당 국내 현황과 관련하여 2020년과 2021년의 통계에 관한 기술만 나와 있는데, 5년 단위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의 통계에 관한 분석이 언급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유의미한 사항이 확인됨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망원인 통계 중 고의적 자해(자살)를 원인으로 사망자 수



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20대와 8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2018년에 비해 고의적 자해(자살)를 원인으로 사망자 수가 훨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50대와 60대에서 2018년에 비해 고의적 자해(자살)를 원인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고의적 자해(자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13,670명	13,799명	13,195명	13,352명
20-24세		527명	577명	640명	647명
25-29세		665명	729명	831명	932명
80세 이상		1,147명	1,193명	1,187명	1,239명
남	20-24세	323명	311명	339명	359명
	25-29세	444명	461명	510명	596명
	80세 이상	730명	770명	741명	811명
여	20-24세	204명	266명	301명	288명
	25-29세	221명	268명	321명	336명
	50-54세	302명	335명	354명	375명
	60-64세	232명	255명	308명	256명
	65-69세	167명	178명	219명	205명

라. 생명권에 추가되어야 할 과제

-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 12. 31.을 입법개선시한으로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다르게,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임
 -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낙태죄’에 대한 입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4차 NA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 2023. 7. 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되었으며,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있음

- 향후 5년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4차 NAP에는 보호출산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2. 신체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3차 NAP의 11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8개 과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 제외된 과제는 '②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증진', '③ 대용감방 시설 개선', '⑥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임
 - '③ 대용감방 시설 개선'은 전국 20개의 대용구치시설 문제를 모두 해소하였다는 것이고, '⑥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역시 동적 재범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전면 실시하고 있다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된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증진' 과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재부와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지연된 '추진지연' 과제였는데,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핵심과제 8.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과제를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NAP(안) 중 '④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시설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의 심판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년법」: 동행영장 집행 통지 대상 확대, 보조인선임권자 확대, 국선보조인 선정 요건 완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규정 마련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처우의 기본원칙에 차별금지 명시, 보호소년 등의 수용 시 고지사항 법정화, 보호소년 등의 실외운동 원칙 규정 마련, 보호장비와 보안장비의 구분 규율, 보호소년 등의 원장 면접 신청권 규정, 여성·장애인·외국인 보호소년 등에 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신설 등
- 제4차 NAP(안) 중 ‘⑧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과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제3차 NAP에 있던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이 생략되어 있음
 - 제3차 NAP 이행평가 자료를 보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은 인권위의 반대의견과 인력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오는데,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되, 인신보호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2중의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구제청구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신체의 자유에 추가되어야 할 과제

- 우리나라는 1995. 2.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고 함)의 당사국이 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데(1996년, 2006년, 2017년), 세 차례 모두 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른 고문의 정의를 형사법 내에 수용하여 고문행위를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음
 - 이와 같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그 고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범죄 입법화’ 과제가 제4차 NAP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우리나라는 2023. 1. 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협약”이라고 함)에 대한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2009. 1. 2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발효 이후 약 14년만인 2023. 2. 3. 또 하나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는데, 강제실종협약 제4조는 ‘강제실종의 형사법상 범죄화’, 제6조는 ‘강제실종 범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제7조는

- ‘강제실종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벌로 강제실종범죄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협약에 따른 강제실종범죄 입법화’ 과 제도 제4차 NAP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2020. 12. 29.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일시보호조치할 수 있는 제도(이른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2021. 3. 30.부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3개월, 1회 연장)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차제에 「아동복지법」에서 행정적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한 절차들을 사실상 인신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준하여 가정법원이 심리·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분리조치’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해당 내용이 향후 5년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4차 NAP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3. 안전권

가. 안전권의 의미와 포섭 범위

- 안전권은 생명·신체의 안전권을 의미하고, 정부나 민간 주체로부터의 나아가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세계인권선언 제3조,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제1문,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항 가호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제4차 NAP(안) 중 안전권에 관하여 기술된 국제적 기준과 국내적 기준을 비롯한 내용을 보면, 제4차 NAP(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안전권이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움
-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안전권의 주된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나. 제3차 NAP와의 관계

- 안전권에 관한 제3차 NAP의 11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4개 과제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4개 과제는 모두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제외된 과제는 ‘②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⑧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⑪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임
 - 추가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제4차 NAP(안)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핵심과제
③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8.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
④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9.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⑩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10.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⑪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3.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다. 검토 의견

- 제4차 NAP(안)과 제3차 NAP가 동일하게 유지된 과제 중 ‘⑧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 해결추진’과 ‘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과제는 그 내용이 제3차 NAP의 내용에서 대폭 수정되어 동일한 과제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⑧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 해결추진 : 제3차 NAP에서는 ‘환경오염, 화재, 감염병’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었으나, 제4차 NAP(안)은 과학기술 기반 ‘생활치안’(폴리스랩 2.0)에 한정된 내용임
 - 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제3차 NAP에서는 ‘안전복지, 교통안전, 수상안전, 건설·지하안전, 지진안전’을 포괄하는 내용이었으나, 제4차 NAP(안)은 ‘지진’에만 한정되어 있음
- 추가된 과제 중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의 핵심과제 3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⑪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의 핵심과제 3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 원인 규명

을 위한 독립된 조사위원회', '재난 복구 및 대책 관련 당사자와 유족의 알 권리 보장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체계 마련', '실질적 재난 발생 후속조치 마련', '안전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NAP(안)의 내용으로 포함된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이나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으로, '재난·참사' 취약계층 보호에 특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라. 안전권에 추가되어야 할 과제

- 최근 대중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의 예고가 인터넷에 게시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정부 내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 향후 5년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4차 NAP에는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제3차 NAP의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1개 과제만 그대로 유지되었음
- 제외된 과제는 '②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과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임
- '②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은 2019. 10. 8.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종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을 할 때 첨부하던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과제완료'라는 것이고,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는 2019. 12. 31. 「대



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제완료’라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제4차 NAP(안)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제3차 NAP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엄격한 법 적용 취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제3차 NAP 이행 경과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제3차 NAP 기간 중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입건되고 기소된 건수의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어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점이 있음

국가보안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건	20명	23명	32명	35명	97명
기소	6명	1명	5명	20명	15명

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추가되어야 할 과제

- 2020. 1.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26개월 보다 장기이면서 현역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에 달하고, ②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대체복무요원은 반드시 합숙하여야 하며(대체역법 제21조 제2항), ③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은 ‘교정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만 대체복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국제인권기준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됨과 아울러 현재 다수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심리 중임
 - 따라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과제가 향후 향후 5년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4차 NAP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된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내에 소수 종교문화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정서가 실재하고 있고, 이러한 점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반드시 제4차 NAP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표현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3차 NAP의 5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1개 과제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1개 과제는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제외된 과제는 '①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③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접근성 개선', '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임
 - 추가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제4차 NAP(안)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핵심과제
③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22.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6. 결사·집회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결사·집회의 자유에 관한 제3차 NAP의 5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2개 과제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2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제외된 과제는 '①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③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④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임
 - 추가된 과제는 '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와 다음의 과제임

제4차 NAP(안)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핵심과제
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나. 검토 의견

- 제3차 NAP의 과제 중 집회·시위에 관한 4개 과제를 자유권규약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에 관한 과제까지 일괄 삭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며, 그 대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는 사실상 상반된 입장을 갖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에 폴리스라인으로 구역을 나누어주겠다는 정도여서 삭제된 4개의 과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제4차 NAP(안)에 추가된 과제 중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제였을 수 있으나, 일상회로의 회복이 이미 상당 기간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제4차 NAP에 포함시킬 만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임

7. 사생활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제3차 NAP의 7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2개 과제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2개 과제는 모두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접근 방향이 다른 과제도 있음
 - 제외된 과제는 ‘③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⑤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⑦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임
 - 제외된 과제 중 ‘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와 ‘⑦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과제완료라는 것임
 - 추가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제4차 NAP(안)	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핵심과제
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7.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1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나. 검토 의견

- 제4차 NAP(안)과 제3차 NAP가 동일하게 유지된 과제 중 '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의 경우에는 만약 해당 과제가 부정확한 정보의 등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과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과제명처럼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사생활의 자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제4차 NAP(안)에 신설된 과제 중 '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경우 인권위의 제4차 NAP 권고안과 과제명은 동일하지만 접근 방향이 다르고, 인권위 제4차 권고안의 내용을 제4차 NAP(안)에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인권위 제4차 권고안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공개·열람·정정 요구', '개인정보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4차 NAP(안)은 개인정보 유출로부터의 기술적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된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제3차 NAP 이행평가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 제7호의2 및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해당 내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임 사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을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으로 보이며(원칙적 촬영 금지를 규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움), 촬영 당시 허용되는 촬영에 의한 영상정보라도 유포 단계에서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를 제4차 NAP(안)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8. 거주·이전의 자유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하여는 제3차 NAP의 2개 과제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이 동일하게 유지됨



9. 인격권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인격권에 관하여는 제3차 NAP의 1개 과제가 과제명만 ‘①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제고’로 변경되어 제4차 NAP(안)에서 유지됨

나. 검토 의견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①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제고’를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제4차 NAP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며, 체계상 ‘7. 사생활의 자유’와 ‘9. 인격권’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제1차·제2차 NAP에서와 같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3차 NAP의 3개 과제 중 ‘②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가 ‘② 군 장병 인권보호’와 ‘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보강’의 2개 과제로 나누어져 4개 과제로 이어졌고, 3개 과제가 신설되었음
- 제4차 NAP(안)에 신설된 3개 과제는 ‘④ 회복적 경찰활동’, ‘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⑦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임

나. 검토 의견

- ‘② 군 장병 인권보호’에는 ‘〈복무 부적응 해소 및 자살예방 체계 강화〉’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 중 ‘자살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은 ‘10.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분리하여 ‘1. 생명권’ 중 ‘② 자살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④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수사규칙」 제82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39조에 규정된 '회복적 대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과제의 내용에 '회복적 대화'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보장'의 세부 내용 중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10.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분리하여 '여성분야' 혹은 '인권교육' 중 '군 장병 인권교육'에 관한 항목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실행력 강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전문강사 및 전담교관 역량 강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표준교안 개발', 「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회」 운영 실태 확인,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 용역
- '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의 내용으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제주4·3 희생자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는 그 내용 상 위해제품에 관한 위해정보나 안전인증 정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규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가칭)」 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나, 자칫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 개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과제명을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1. 참정권

가. 제3차 NAP와의 관계

- 참정권에 관한 제3차 NAP의 5개 과제 중 1개 과제가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되었고,



- 나머지 8개 과제는 제4차 NAP(안)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제외된 과제는 ‘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임

나. 검토 의견

- 제4차 NAP(안)에서 제외된 ‘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과제는 과제명만 보면 실질적 보장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제3차 NAP의 내용을 보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이고, 해당 과제가 포함되게 된 배경에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과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인권위의 2019. 2. 25.자 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굳이 해당 과제를 제4차 NAP(안)에서 제외시키기 보다는 과제명을 수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임

IV 나오며

- 비록 당초의 계획 보다 8개월 정도 늦게 개최되었으나,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5년 동안의 인권정책의 틀을 마련하년 제4차 NAP가 충실하게 수립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램

토론문

I 양 흥 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NAP에서 언급한 사항의 무게를 고려하면 늘 만족스러울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나 범위면에서 아쉽다.

1.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으로의 대체가능성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개폐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최근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종신징역/종신금고)’의 도입을 언급한 바 있는데,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의 대체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선택지이므로 기본계획에서 “검토” 수준으로 폭을 열어두는 것이 틀렸거나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검토”는 그야말로 ‘검토’에 그쳤던 점, 구체적인 대체형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의 가능성을 기늩해 보기 위한 연구도 필요한 점,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상태로 2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검토”의 방향과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 ‘절대적 종신형’을 거쳐서든지 아니면 ‘상대적 종신형’으로 바로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향’을 설정해도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한다.

한편,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는 단편적인 질문에 대한 찬반이 과연 정확한 여론을 나타내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체형벌의 존재나 그 집행방법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이를 토대로 국민들도 적절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나 존치냐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대체형벌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공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인신구속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나 절차를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청 인권보호부의 위상·역할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대체로 담당검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안전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 제도이고, 그나마도 2020년 이후 개최건수가 급감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신구속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의 하나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검찰청 인권보호부 역시 순환보직의 한계, 검찰청 내 조직의 한계, 조직과 권한의 한계가 분명하다. 또, 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검찰청 내에서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보완할 사항없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측면, 제도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불구속수사·재판을 받는 것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시 영장기각시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 영장실질심사시 피의자측의 자료접근권 보장(‘깜깜이변론’으로부터 탈피), 체포·구속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포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경찰-검찰, 지검-고검), 구속집행정지제도 활성화,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실질화·활성화, 형해화된 필요적 보석의 정상화, 보석조건 다양화 등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3. 수용시설에서 수진권 제한 문제

수용시설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진권(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이 존재함에도 현실적으로 수용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해화된 권리로서 수진권의 실질화·활성화가 필요하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일반인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힘있거나 돈 있는 자들은 누릴 수 있지만, 일반인 수용자는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용시설내에서의 불평등 처우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킨다.

수용시설 내에서의 진료는 의료설비, 의료진의 전문성·숙련도 면에서도 완전하지 않고, 이런 완전하지 않은 의료수준도 수용의 불편함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의료시설에서, 어떤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관한 수용자의 선택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나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수용시설 내 의료설비·의료진을 개선함으로써 외부진료가 필요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과 같은 특혜성 형집행정지는 피하면서도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부진료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용시설이 의료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외부진료가 특혜를 연상하는 상징이 되지 않도록 수진권 행사절차와 방법, 외부진료 허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4. 과밀수용과 정원기준

현재 수용시설의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계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원기준이 바뀔 경우 과밀수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즉, 수용자 1인당 면적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형해화된 독거수용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면한 과제는 현행 기준에 맞는 수용률 하향이 우선이지만, 기본계획에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5. 표현의 자유 증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방안으로, ISP에 의해 삭제·임시조치될 경우 정보게재자에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이의제기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신설)를 통해 삭제·임시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다른 기본권보장방안에 비해, 표현의 자유 중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에 비해서도, 매우 구체적이다. 특정한 정책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ISP에 의한 삭제·임시조치시 정보계재자의 선택에 의한 즉각적인 Put-back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권의 '보장'은 삭제·임시조치된 표현물의 복원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온라인분쟁조정위를 만들자는 주장은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가 주도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나, 인터넷 환경에서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그 자체로 잠정적 행정 심의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규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이런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체계를 유지하거나 잠정적 규제의 확대라는 방향은 옳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을 신설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관한 이익'에 관한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불요불급한 문제로,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추가해뒀고, 이로 인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비방 목적'을 부정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실무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어떤 인권증진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표현행위와 관련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확대하는 방향이 처벌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형사법학계나 실무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다양한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을 보인다.

6.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1994년 공직선거법 체제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던 두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인터넷에서의 정치표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

한 위헌성을 확인은 오래 전 있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입법“지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고, 이미 진행중인 논의(사실 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20년이상 되었다)를 따라가는 정도에 그쳐서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얻기는 어렵다.

7. 집회방해행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그나마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에 방점을 뒀으나 정권이 바뀌자 경찰도 과거로 회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복집회(집회경합)에 대한 분할개최가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 과제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을 부여하고,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집회시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해는 경찰에 의한 과잉대응·진압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불편을 전제한 것인데, 그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막고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오히려 NAP에는 집회시위 신고제를 유지할 것인지, 신고없는 소규모 집회시위의 인정범위, 미리 신고할 수 없는 집회시위(우발집회 등)를 위한 긴급신고제도 도입 여부 및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허용기준,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도입,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시간대별·상황별 기준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8. 압수수색제도 개편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에는 이메일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판결 이후 일부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소

위 전자증거에 관한 수색, 선별, 압수, 폐기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 등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제한을 법률상 근거없이 추가하는 변칙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무규범상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계획을 NAP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 조 재 현(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년 이후 3차에 걸친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우리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 제4차 NAP의 수립과 시행은 그 동안의 인권정책과 시행을 바탕으로 우리 인권의 국내적 지표를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NAP는 11개의 세부적 인권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4차 NAP권고안에서 제시하는 핵심 인권과제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지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생명권 관련하여 낙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명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한 핵심적 과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문제이다. 사형제 폐지 관련하여 이준일 교수는 이미 사형 폐지에 관한 신증론은 설득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폐지를 주장한다. 이상경교수는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 중에 있고, 사형제 폐지에 관하여 국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방향과 국민 여론 및 법 감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NAP 제4차 과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체형벌 도입을 통한 사형제 폐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형제의 폐지는 헌법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헌법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통계적으로는 사형제 집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오늘날의 사법부는 사형선고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민적 법 감정을 무시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등은 국민적 법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은“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확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개축을 통해 수용 비율은 점차 낮아졌으며, 2022년 3월 6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NAP 제4차 과제에서도 교정시설의 신축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등 수용자의 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교정시설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의 문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재사회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제4차 NAP에서도 수용자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의 강화를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NAP는 안전권을 새로운 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위험사회로 진입한 이후 안전권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안전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권이 강조된다. 이준일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 안전권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타인(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전권의 핵심은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새롭게 인식되는 ‘안전에 관한 권리’, 이른바 ‘안전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안전권’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하거나 독일과 같은 ‘국가목표조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안전권 개념이 등장한다.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조대현 재판관의 일부위헌의견에서 “인간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안에서도 생명유지권과 생명안전권은 보호의 정도와 제한가능성의 정도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생명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¹⁾ 그런데 안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법치국가적 모델에서 예방국가로의 변모를 요구한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것을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특정한 실체를 갖는 적극적인 권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가 위험스러운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

1)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조대현재판관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생명·신체의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그와 별도로 평화적으로 생존할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규정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 위협의 발생 이전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위험사회의 아젠다인 예방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가 더 중시된다. 그 때문에 국가목표조항의 설정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안전을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시각에서 이해하는 경우에도 기본권보호의무이론에서와 같이 통제규범으로서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사법적 판단과는 달리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적·행정적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로서 안전권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4차 NAP는 공직선거의 분야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채택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규제행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²⁾,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³⁾,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⁵⁾,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⁶⁾,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⁷⁾,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⁸⁾에 대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이 그것이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유를 천명하면서도 규제 위주의 입법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헌재 2022. 11. 24. 2021헌바301.

3)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4) 헌재 2023. 6. 29. 2023헌가12.

5) 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6)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7) 헌재 2022. 7. 21. 2017헌가4.

8) 헌재 2022. 7. 21. 2017헌가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이다.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헌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한정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경계적 태도를 유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준일 교수는 발제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과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음란표현'에 대해서도 보호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보호된다고 결정하였다.⁹⁾ 보호영역과 제한의 단계로 구분하는 기본권이론에서 보호영역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음란표현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일정한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혐오표현은 표현의 어떠한 요소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준일교수의 표현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집회와시위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야기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문제는 입법적 개선이 빨리 뒤따라야 한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교통약자나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에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계획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9) 현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차별·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차별·혐오표현'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떠나 규명될 수 없다. ...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표현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Section

0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발제
1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송 세 련(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 송 세 련(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배경

1. 기업환경의 변화와 입법동향

기업환경은 본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기업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거의 두 세기에 걸쳐 근대 산업활동의 태동기부터 치열하게 이어져 와 그 와중에 많은 이념과 갈등마저도 겪어왔다. 그 맥락에서 지난 10여년 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과 ESG 논의가 활발하게 생성된 것이며 특히 근래 기후변화, 팬데믹 등 지구적 위기를 인류가 같이 겪으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와 방법론이 사회에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근래 입법동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비재무적 성과와 ESG에 대한 입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과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들 수 있겠다. CSDD 지침안은 인권과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성 기업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²⁾ CSRD는 CSDD 보다 먼저 입법이 진행된 것으로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 1) 경희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인권경영포럼 위원장.
- 2) 현재 유럽의 입법절차 말미의 단계인 삼자논의(EU Commission, the Council of Europe 그리고 EU Parliament)를 진행중이고 3자가 합의된 조정문안이 나오면 지침안 제정이 될 것이다.

정보는 투자자, 규제 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중 중대성

위 두 입법이 공조하여 이루는 새로운 기업의 규제환경은 이중중대성 (Double materiality)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미 비재무적 성과보고의 기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종래 기업 활동은 주로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가치를 가늠하고 전략을 세워지고 (재무적 중대성) 기후, 환경, 법제, 인권 등은 외부효과 (externalities)로 고정하여 그러한 외부효과가 내부의 재무성과를 어떻게 좌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이중중대성 평가는 여기에 기업의 활동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사회·환경적 중대성)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여 두가지 중대성을 모두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다. 이중중대성 평가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설문, 인터뷰, 협의 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3.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는 시사점

대표적 예인 CSDD와 CSRD를 비롯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관련된 많은 입법이 유럽을 필두로 각국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국내에서도 실사의무화 법안과 보고지침 등 관련된 동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동향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 CSDD와 CSRD가 가져오는 변화는 종래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하던 기업활동이 이해관계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즉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적지않게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NGP를 비롯하여 CSR관련 활동이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 활발한 입법을 통해 내용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기업활동과 기업정보의 시장유통을 촉진하고 이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제도의 정립에 편승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수행과 측정의 방법론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종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과 보고서는 확립된 표준이 없이 다분히 주관적이거나 홍보광고 성격으로 수행되고 양산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권실태와 지속가능성 노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ESG 평가도 각양각색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실사와 보고를 의무화 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시장메커니즘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활동의 우선순위에 이해관계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미있게 자리잡도록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정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할 사항은 우선 국제적인 규범의 흐름을 국내에 정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사와 보고라는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방법론이 기업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정부의 입법과 장려를 통해 촉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각 분야의 국내 이슈 중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재무적 중대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보고지침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소통 및 보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소고의 주제는 기업과 인권 분야와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를 추진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러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초안으로 마련된 계획을 바라보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기업과 인권

1. 인권실사의 정착이 <인권경영 제도화>의 핵심

인권실사는 기업의 인권존중의 핵심사항이자 현재의 ESG 방법론을 견인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유럽의 ESG법안인 CSDD는 UNGP에서 강조한 인권실사의 방법론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책임 있는 기업행동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및 글로벌콤팩트의 기준과 결합한 가운데 환경과 거버넌스 영역까지 그 적용이 확장된 것으로서 CSDD 지침법안의 서문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이 발표된 후 이 규범이 정착하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왔다. 이행원칙은 우선 OECD, ILO,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 기구의 지지를 얻어 내어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입지를 초기에 굳힌 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활발한 활동을 근간으로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을 제정하여 국가의 보호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고하고, 이행원칙에 나와있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일환으로 국영 및 공영기업, 기관이 인권존중을 경영의 원칙으로 할 것을 장려하며 입법과 지도를 통해 인권실사와 인권존중을 내재화할 것을 추진했다. 동시에 매년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학계를 망라하여 주제를 논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UN은 올해도 계속해서 11월 말에 12번째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또한 경우에 따라 선도적으로 거쳐왔다. 이행원칙이 발표되기 전부터 국내 시민사회와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을 논의했고, 그 이후 NAP를 제정했으며, 인권경영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개하여 매년 평가받도록 정책을 전환한 지 벌써 6년째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었고 (법무부 발간 인권경영 길라잡이는 2021년에 작성되었다) 그 와중에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추어 왔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경우 선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기업과 인권 계획은 인권실사의 법제화와 인권실사의 정착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과 인권 NAP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장에서는 4차 기본계획의 과제로서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명기하고 있다. 그 제목하에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해외진출기업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노력 등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입법에 관하여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논의 지원에 대해서만 짚막하게 적고 있다. 입법이 정치활동의 근간으로서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입법자체를 목표로 하기 쉽지 않



다고 할 지라도 인권실사 (또는 기업실사)의 입법은 국제적인 트렌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익을 위해 전개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물론 CSDD와 CSRD가 유럽연합국에 국한된 입법이지만 소위 '브뤼셀 효과'로 인해 어느정도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는 입법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유럽의 입법은 유럽과 무역을 하는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과 무역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아 국내 입법을 통해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함께 국내 인권의 보호 및 존중, 그리고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유럽의 입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전기한 대로 국내의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시점에 있다. 민간기업대상 인권경영 길라잡이가 2년전 법무부에서 나왔고 인권위에서는 작년에 민간기업 대상의 시범사업을 전개한 것도 시기의 적정성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국내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게 뒤지지 않고 인권실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비재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투자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국제 트렌드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사 및 이 중중대성 평가를 통한 보고서를 기업활동의 일부로 삼고 싶다 할지라도 국내입법과 지원이 없이는 그러한 비용의 지출을 결의하여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자발적으로 설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기업실사를 해야한다는 입법은 이제 규제라기 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경영의 제도화 활동의 주안점은 국내 및 해외 동향으로 볼 때 기업실사 입법에 둘 충분한 이유가 있다.

또한 인권실사와 보고의 기틀이 마련된 후에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대상을 보호하기위한 시책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노동자 인권,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확보 이슈 등에서도 인권실사와 개선을 위한 인권경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은 예방의 효과와 함께 개선을 위한 적용이 기업활동의 일환이 되므로 인권존중 활동이 생산을 위한 기업활동과 마찰을 빚는 경우를 줄여줄 것이다.

2.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의 또 다른 큰 축인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가. 고충처리, 구제절차는 인권실사의 피해자 구제 항목은 물론이고 인권경영체계 구축에도 중요한 분야이므로 인권경영의 제도화나 정착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안이다. 거의 모든 기관이 고충처리제도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 고충처리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이 적지 않다. 고충처리의 기본이 되는 익명성과 객관성 및 개인정보 보호, 2차피해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는 기관이 많고 고충처리 제보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거나 제보를 하더라도 인사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경우 많다. 특히 요즘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고충처리의 내용이 세대차에서 오는 오해, 또는 조직문화, 공정성, 정당한 작업지시의 범위 등 상호이해의 결핍이나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인권침해로 인식하거나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상적인 고충처리 실효성이 강화되는 것이 단체소송과 여타 피해구제의 효과를 더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곧 고충처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한 인권실사 의무화 입법과 가이드는 고충처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이해관계자 고충처리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고충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우선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고충처리 접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지, 또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거버넌스와 의사결정기구 참여가 정례화되어 있는 지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확연히 드러나는 이해관계자인 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접근이 용이하게 제도가 개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활동에서 직원 이외의 이해관계자, 공급망, 주민 등이 고충처리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지가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고충처리를 수동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나 절차를 넘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통과 한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고충처리 구제절차 실효성 제고에 나타난 항목 다수가 지난 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사안의 후속조치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나 NCP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된다. 아직 추진이 미흡해서 계속 항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특히 NCP의 경우 아직 문



제가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 OECD회원국으로서 주요기관인 NCP의 활성화에 구조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남아있지 않은 지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보고기준의 정착과 함께 이해관계자 참여가 명시적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에 있어서 또다른 한 축은 비재무적 성과의 보고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경영 자체의 실효성에 있어서 보고와 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SRD가 CSDD와 함께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의 근간이 되듯 국내에서도 보고기준의 입법적인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입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기업마다 속해 있는 산업이 다르고 기업활동의 형태가 상이한 가운데,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외에 인권실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보고서에 적혀진 내용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결국 사고가 생긴 건수를 중요하게 부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민간기업은 그나마 경영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도 없이 주가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규제환경은 국가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투명하고 충실한 보고와 소통에 의해 이해관계자 및 대중이 평가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기업과 인권의 입법에 있어서 실사의무화와 함께 보고기준이 법제화되는 큰 이유이며, 메타규제로 흔히 불리는 이러한 규제방법을 기업과 인권에서는 “스마트 믹스” (Smart Mix), 즉 자율과 규제의 현명한 조합에 의해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의 비근한 예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역할을 볼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기업활동을 감시 규제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심점으로 책임을 전담하게 하고 이러한 이사회 거버넌스를 조성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의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을 한 뒤 그 결과는 시장에서 주가로 판정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입법과 행정적 지도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에 관한 의견의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하는 것은 투명하고 충실한 보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나. 기업실사 보고가 자본시장에서 가지는 의미의 확대

충실한 보고와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해당기업의 인권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곧 그것이 기업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연결되도록 하는 에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기업실사활동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과연 현재의 ESG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동향이 결실을 맺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행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에코시스템은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자리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정보공시와 연례보고서가 전문가, 일반인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매겨 그러한 평가가 종합되어 자본시장의 주가 변동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보고서도 투명하고 충실한 보고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다. 사회에 주는 시사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폭넓은 이해관계자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허가를 받고 (Social license to operate, SLO)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슈에 대해 소통을 통해 공감대와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Social Contract) 과정을 일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기업과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국내의 조직구조에서 세대차 및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오해도 많아 이것이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노사의 문제도 평소 대화와 문제해결의 공조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단협의 대립으로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역사적으로도 노사정위원회가 한번도 의미있는 성공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기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다른 현실 및 세계관을 가진 진영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상대방에 트집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심각한 양극화를 정치권을 포함하여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과 인권 및 보고체계가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실태파악,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개선활동과 투명한 보고(즉 기업실사활동)는 적어도 기업내에서 신뢰와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배양된 소통과 문제해결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이러한 중장기적 의미에서도 기업의 진정성 있는 인권실사/보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의 일관성이 절실함

정부의 계획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과제중의 하나는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중복되는 비재무적, 사회적책임 사안이 각 정부부서에서 따로 관리되어 비효율적이거나 혼란을 초래하고 그로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의 이슈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기구들 사이에서도 생기는 문제이고 국내로 국한해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슈이다. 예를 들어, 인권위와 법무부는 인권경영에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기재부는 윤리경영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하면 산자부는 ESG 표준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청렴부패에 관해 보고서를 요구하고 노동부는 주요 인권이슈의 하나이기도 한 직장내 괴롭힘, 갑질 등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여가부가 주로 주축이 되는 성폭력에 관해서도 절차와 요건이 좀 다르다. 이러한 사안들이 일부 겹치기도 하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과 인권경영,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서는 다 따로 써야하는 지 등의 질문을 낳게 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이나 비효율은 간소화, 표준화 되어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몫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기본계획 초안에도 명기되어 있는대로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경영 부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내 유관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는 회의체의 구성 부분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법안에는 정부 내 인권관련 부서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여 되어 있는데, 인권정책기본법의 통과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비슷한 기구를 인권실사법이나 공급망관련 법안에 넣거나 기존 회의체에 추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미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통과가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Ⅲ 디지털 시대의 인권

1. 기업과 인권간의 깊은 연관성

디지털 기술과 기기의 혁신, 투자, 상품화, 개량 등 활동의 주요 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나 또한 기술의 악용, 관리소홀에 의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것도 많은 경우 기업활동을 통해 행해진다. 기업과 인권이 기업활동과 인권 사이에 기업실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기업과 인권의 조화를 꾀하는 것처럼, 디지털 혁신이 가져오는 가능성을 추진할 자유와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그 과정이나 결과물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 환경, 공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하는 유사한 정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룰과 시장 경쟁에서 낙오되는 구성원 및 약자에 대한 복지와 구제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균형의 개념의 예를 미국 루즈벨트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시장질서 안정화를 위한 규제와 복지제도를 확립한 뉴딜정책 전개와 케인즈 경제학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후 이것이 국제질서로 확장된 것을 가리켜 '내재된 자유주의'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존 러기라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만들어 창시자가 된 동일 인물이다. 디지털 시대 인권도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그 영향에서 파생되는 인권침해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내재된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비슷한 맥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조화와 균형의 달성에 필요한 계획을 국가기본계획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슈퍼터 류의 창조를 위한 파괴 행위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자 정신, 실험 정신이 경직된 사고에 묶여 시작부터 좌절되거나 행정적 빨간 테이프에 묶여 움푹달짝 하지 못하는 기업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상상하기도 힘든 사회와 환경일 수 있으므로 연구 실험하고 가운데 리스크와 기회를 인식하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정기적



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윤리적, 법적 이슈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발주하는 등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디지털 혁신은 양면에 날선 검에 비유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을 비롯한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 양극화, 안보위기 등이 해결될 단초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혁신이 인권 및 사회와 환경, 공정성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실사와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실사를 기업이 신사업 개시하기 전에 영향평가 하듯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과학 기술 연구 인력이 포함될 것이고³⁾ 또한 사업자들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마침내 과학기술이 인문학적인 컨텍스트와 자성을 통해 인류 존립의 위험성 등 커져가는 기술 리스크를 파악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한 사회가 이러한 리스크를 견제할 역량이 배양될 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요소가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IV장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 별도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고 큰 목차로서 기본원칙 마련, 정보 접근권 강화,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3. 디지털 시대의 인권: 디지털 인권기본원칙 마련

디지털 시대의 인권도 기본적으로 기본원칙에 기술개발 및 연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인권보호의 메커니즘이 균형감 있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과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 그 역할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비슷한 예로 일본의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의 분야와 용도,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술과 리스크에 대해 선빨리 하나의 법안으로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지 우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도한 규제 뿐만 아니라 미흡한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형성되고 있는 국제규범과의 수렴과 마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이슈에 관해 유럽과 미국의 접근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혐오표현의 대응 등), 여러 경우에 논의를 통한 국민적합의 내지는 적어도 공감대의 확산을 중심으로 균형점이 어디인

3) 우리나라에는 학술원과 과학기술한림원이 있는데 한림원에선 몇년 전 과학기술인의 인권존중 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다.

지 찾아야 할 것이다. 혁신의 자유와 인권보호가 균형을 꺾어야 하는 것처럼, 디지털 혁신의 주요 이슈, 즉 프라이버시, 정부의 검열/사찰 가능성, 사이버보안, 정보접근성, 알고리즘 관리, 아동보호,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등 주요 이슈의 논의에 정당한 이견과 주장이 양립할 수 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로만 봐도 여러 정부부서에 연관되고 파생되는 이슈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 법안으로 묶어서 오히려 부서 이기주의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한 법안에 묶여있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이 묻혀있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 법안에 담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연관된 법안의 개정으로 특화하되 중앙에 조정기능을 가진 협의체를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4. 디지털 기술의 공공재적 요소

디지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퍼블릭 유틸리티처럼 관리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기술 개발의 예를 보면 연구 투자를 통한 발명으로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그에 수반한 독립적 사용권을 일정기간 누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디지털 기술에 많은 부분이 경제 사회 생활에 중요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므로 기술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와 교육 접근성, 정부의 복지 제도, 재난 시 동원 가능 여부 등 기술의 접근이 경제사회생활에 경쟁력을 좌우하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목되어 있으므로 기술이 기업에 이윤추구 논리만으로는 계산되기 힘들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접근이 차단 되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고 따라서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이득과 보호가 부족하면 개발에 매진할 동기를 잃게 되므로 이 또한 공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면적으로 복잡하고 합의와 절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균형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에서 GDPR, ePrivacy, NIS Directive, Digital Services Act와 Digital Markets Act, 인공지능 규약 등의 다양한 입법사례 및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이러한 법들이 기업실사 및 보고지침과 동시에 시행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5. 민관파트너십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주요 수요자이자 투자가, 또한 기술적용의 시험장이 되는 것은 주로 기업 일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플랫폼사업자도 기업과 인권 환경에서 기업활동의 임팩트에 대해 기업실사를 하면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시급성과 사안으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포털은 검색기술, 알고리즘, 수익분배 구조 등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추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정보접근권, 디지털 스마트복지에 중요 파트너가 되고 반대로 사이버범죄, 성범죄 등 인권침해의 온상이자 해결의 키를 쥐고 있기도 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장이기도 하고 반대로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해결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경우 기본계획의 많은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어차피 주요 이해관계자이므로 정책의 입안과 적용 면에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조성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감시와 자율규제사항은 보이나 공조방안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6.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계획에 따르면 정보접근권 해당사항이 모두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복지관련 사항이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디지털 교육강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격차 해소,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등 가치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다만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에 세부 예로는 배움터 운영, 가상 국립도서관,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정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정보 접근권이 경제적 기회창출에 중요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정부단독의 프로젝트 보다는 디지털기술 및 정보 창출과 사용, 침해 등 주체가 되는 사업자와의 공조를 통한 좀 더 야심찬 프로젝트 들이 생길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목표설정에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관여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같이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사안의 과반이상이 기업활동과 과학기술 연구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인 과학기술연구 주체 및

사업자의 공조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보접근성의 경제적 효과에서도 정보접근성의 하위 목표로서 청년, 기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창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인권의 추구가 포함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IV 결어

이번 기업과 인권 계획과 디지털시대의 인권에는 지난 계획의 연장선상이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선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 이슈와 디지털 기술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적인 기업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참여가 보다 정례화되어 인권경영과 디지털 인권이 보다 정교해지고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Section

0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발제
2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김 명 주(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ㅣ 김 명 주(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3-2027)

2023.8.2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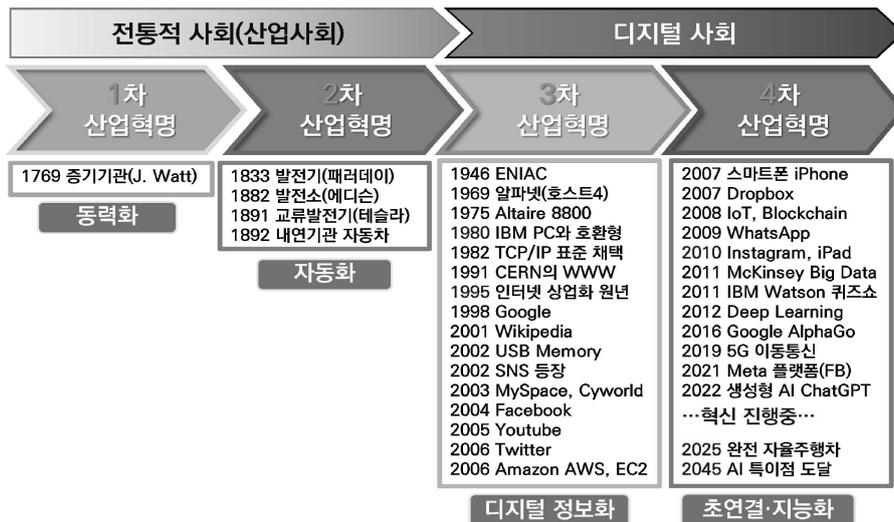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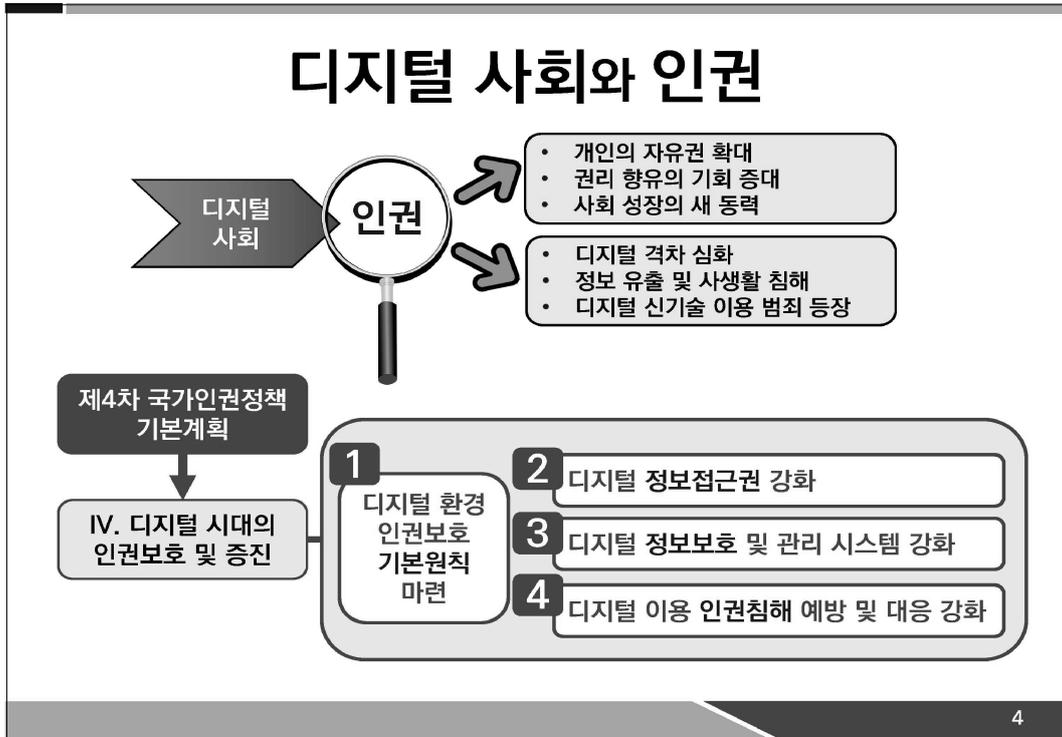
ㅣ 김명주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장
OECD GPAI, Expert Member

목차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1/7)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 <제19조>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27조 1호>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자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 <제19조 2호>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사회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 <제15조 1호>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인정한다.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
 - <41> 당사국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에 참여하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선언('09)**
 - <제16조 (a)목>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 도입 및 제도 수립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2/7)

국내적 기준

- **지능정보화기본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 사생활 보호 시책 마련 의무
 -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신체·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등 권익보호 시책 마련 의무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와 사업자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

6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3/7)

현황

- **패러다임 변환: 정보화 ▶ 융복합 ▶ 디지털 심화(sophistication)**
 - 관련 산업과 기술 변화 중심에서, 국가 전반 <혁신과 돌파>의 핵심 동력화
 -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
 - 이점: 이용자 편의성 증진, 비용 절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 등
 - 부작용: 이해관계자 갈등, 기술 불신, 불공정 행위 등
 - [사례] 챗GPT: 기존 규범으로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이슈 등장
 - AI 생성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필요 ▶ 디지털 윤리의 전국민 소양화**
 -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20.12) 3대 원칙, 10대 요건
 - 민간 차원의 윤리 원칙 수립, 교육 등 자정 노력 병행 중 [예] 카카오, 네이버, 스캐터랩, KB 등
 -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마련 ('22. 12) 3대 지향 가치·8대 실천 원칙
- **피해자 안전조치용 지능형 CCTV 도입 ('22년 하반기) AI 기술 활용**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
- **플랫폼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 증가**
 - 이용자 권의 침해, 불공정행위, 서비스 장애,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 불법·유해정보, 디지털 성범죄물, 거짓리뷰·악성댓글의 확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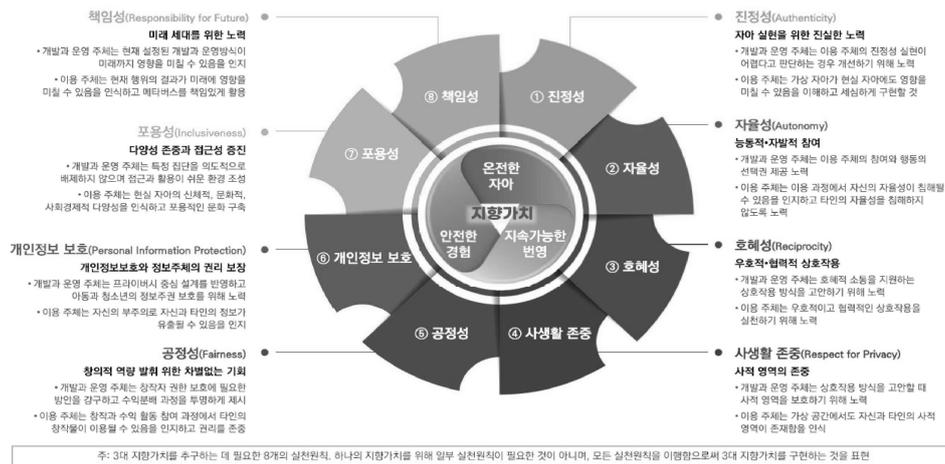
7



인공지능 윤리 기준 ('20.12)



메타버스 윤리 원칙 ('22.12)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4/7)

제4차 기본계획 과제

1 (가칭) 「디지털사회기본법」 제정

-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23)
- 디지털 시대 제기될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새 질서(정책방향 및 기준) 확립

2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도록 수립('23. 9.)
- 주요 내용 ▶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④ 공통기준·원칙 제시
-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정책 방안('21. 3.) 지속 이행
- (가칭) 「디지털 플랫폼 등 신유형 서비스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대응 방안」,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 등 마련('23 - '24)

3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연간 35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교육 추진('23 - '27)
- 디지털 윤리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연계 대국민 행사 개최('23 - '27)

10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5/7)

제4차 기본계획 과제

4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 AI 제품·서비스 기획·운영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22)의 분야별 확산('23 -)
-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AI가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 체계' 검토('23-) ◀ 유네스코 회원국 촉구 중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 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23-)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검토('23-)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22. 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하며, 기술개발·운영 중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방지

11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6/7)

제4차 기본계획 과제

5 메타버스 윤리 원칙 보급·확산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23~)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23~)
- 메타버스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 개발·보급('23~)
-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 개발('23.~)
-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별·주제별 윤리원칙 이행 및 실천 방안 지원('23~)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연구 추진('23)
- (가칭)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23)
- 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연 2회)을 통한 자율규제 현황 공유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논의('23~)
- 메타버스 이용자 대상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윤리역량 강화 추진('23~)

12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7/7)

제4차 기본계획 과제

6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3)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계속)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유도('23~)

13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1/9)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 <제27조 1호>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사회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 <제15조 1호>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인정한다.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
 - 과학, 과학 지식 및 응용과 관련된 시설, 서비스, 물품, 정보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정책, 관행 제거
 - 과학 기술 부문에서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저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철폐
 -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건강권과 여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매우 중요한 과학 진보의 응용에 대한 접근 보장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선언('09)**
 - <제16조 (b)목> 과학과 그 응용의 이익에 비차별적 접근 증진

14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2/9)

국내적 기준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촉진 지원 규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서비스의 구축·운영, 고도화 의무 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학교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의무 부여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및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의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의 진흥·활성화 의무
 - 정부의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의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시책,
 -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품질인증 등
- 장애인 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권 개선 의무 부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등 방송사업자 등 대상

15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3/9)

현황

- 디지털을 이용·활용할 수 있는 역량·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격차 발생
 -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시·공간 제약 없는 지식정보 제공으로 문화 격차 해소 필요
 - 디지털 원주민을 위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도구 마련할 필요
 - 해상에서는 5G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안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 통신서비스 확대, 원격의료 지원,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제공 등 해상 안전·복지 증진 필요
 - 초·중등학교의 정보과목 교육시수(51시간)가 해외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수 확대와 교원의 증가를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 확보 필요
 -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부족 해소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 제공 필요
 -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등 4대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접근 수준의 격차가 큼
 -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평균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어서 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 필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필요

16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4/9)

제3차 NAP 이행결과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 (정보접근성 보장범위 확대) 기존의 정보접근성 웹, 앱에서 벗어나 무인정보단말기('20. 6.), 전자출판물('21. 6.)까지 확대(「지능정보화기본법」)
 - (기술표준 제·개정)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KS X 9211) 개정('22. 2.),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KS X OT0003) 개정('22. 12.)
 - (정보접근성 기술 기반 확대) ICT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웹 접근성 개선 기술교육 추진('18-'22., 20회) 및 제작기법 개발·보급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지원)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 구매 도입('21. 6.), 접근성 개선 키오스크 개발·실증('19-'21, 5건), 현황조사('19-)
 -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 장애인 복지관 등 기관에게 정보접근성 직접개선 지원('18-'21, 153건) 및 이용도 높은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지원('18-'22, 1,100건)
 - (인식 제고) 정보접근성 최신기술 및 정책현황 공유 민관협력 콘퍼런스 개최('18-21, 7회)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활용과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18-'22, 20건) 및 보급('18-'22, 18,307대)

17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5/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1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 운영 및 맞춤형·방문교육 실시
 - (지역 특화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배움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효율성 제고
 - (체험존 조성)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 스피커 등을 배치한 체험존 조성
 - (찾아가는 배움터 버스) 도서산간,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버스(키오스크, 태블릿 탑재/서포터즈 파견 등) 운영
 - (이행계획) '23년 배움터 1,000개소('22. 911개소) 운영, 60만 명 이상 교육, 강사·서포터즈 4,000명 채용 예정
- 시간·지역·공간의 제약 없이 국가 지식정보를 누구나 향유할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 '23 가상 국립도서관 시범 콘텐츠 구축. 이후 매년 3단계 개발 진행.
 - '26 가상 국립도서관 서비스 개시
 - '27 신규 콘텐츠 구축 및 고도화

18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6/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1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해상 원격의료 지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바다내비 단말기(영상통화)를 활용하여 관공선·내항선박 대상 원격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지원
 - 응급상황이 발생한 선박과 의료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및 의료키트 보급 등 시범사업('23)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확대 운영('24-)
- (해양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육상에서의 도로 교통정보와 같이 해상에서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해양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제공('24-)
 - '23 관계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바다속보(해양조사원), 어업기상 및 안전 캠페인 등 정보제공
 - 캠페인 사례: 해양사고 속보, 정책브리핑,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

19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7/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2 디지털 교육 강화

- 정보 과목 필수 시수 확대 및 교원 확보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학교 정보교과 필수 시수를 현행 대비 2배 확대 운영
 - 정보교사 관련 충원계획 및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 추진
-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제공
 - (지역 디지털 교육과정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과정을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기술분야로 확대('23-)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
- 디지털 가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 이수 지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활용하여 모든 대학생 및 일반 국민까지 교육 확산

20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8/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3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접근성 제도 개선 및 표준 확산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표준 개정('22. 12.)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품질인증 기준(고시) 개정 추진
 -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 신규 도입('22. 11.~)에 따른 성과 등 모니터링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지원·보급 확대
 - 국내 개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개발 지원(연 4건)
 -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속 확대 추진

21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9/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4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스마트 돌봄 지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화재 등 응급상황 대응 뿐 아니라 정서·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모형을 생성해 대상자 확대
 - ICT: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 (현황) 독거노인, 장애인 등 18여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에 보급 추진. 50만 가구로 확대('24-'27)
 - (모형 생성) 광주 서구의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
- (스마트 건강관리)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 등을 위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27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 전담 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수치 모니터링하고, 건강실천과제 부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2) 86개소 ▶ ('23) 139개소 ▶ ('27) 258개소

22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1/6)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자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2/6)

국내적 기준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의무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금지의무, 침해에 따른 삭제요청 등 권리 구제절차 및 정부의 정보보호의무 규정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동의철회권('23. 3. 14. 신설, '23. 9. 15. 시행)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23. 3. 14. 신설, '23. 3. 15. 시행)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23. 3. 14. 신설, 시행일 미지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서의 신용정보 주체 동의 의무화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3/6)

현황

- 공공·금융 중심으로 다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인 개인들의 마이데이터에 대해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오남용 우려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분야별 자기정보 전송권을 도입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 확산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중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시행('전자정보법' 제43조의2 개정, '21. 12. 시행)
 - 공공분야 전송요구권 실현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정부24 앱) 서비스 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로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정보 159종과 은행신용 대출 등 59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22. 12.)
-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랜섬웨어 신고 건수(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건) ('19) 39→('20) 127→('21) 223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CI)가 온라인상 개인의 실질적 식별자로 활용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일괄 변환된 C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CI의 안전하고 절제된 활용을 위한 규범 마련 필요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자율적 데이터 보호, 피해 예방 등 디지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 필요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4/6)

제4차 기본계획 과제

1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매년)
 -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중심의 새로운 실증서비스 발굴
 -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대국민 마이데이터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정보주체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 시스템 본격 적용('25.)

26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5/6)

제4차 기본계획 과제

2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안제품 도입 지원(1400개 기업)('23)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지속 추진('24 - '27)
 - 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웹 방화벽,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 보안제품 도입 지원

3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CI)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 추진
 -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계정보 일괄변환 제도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개정 추진 및 지원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3. 1. 3.)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할 경우, 본인확인 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필요. CI(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부과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7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6/6)

제4차 기본계획 과제

4 데이터 보호 및 관리 강화

- 검색·SNS·OTT·앱마켓·쇼핑·모빌리티 등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별로 통합 평가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 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전기통신사업법」제32조 제1항, 제2항)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다수 연계 플랫폼을 양산하므로 기존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 이용자 보호 유도
- 추진계획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시범 평가 도입('23)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통신 장애 등 사회적 책무 제고 관련 배경 상황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항목 도입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본 평가 실시('24) : 데이터 이중화 등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을 사업자가 자체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미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보호 자가진단제도 활성화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평가 안정화('24.~'27.) : 평가자료 작성 단계부터 자료 제출 실시, 평가위원의 심사 및 평가결과 대국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1/9)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8조>**
 - 모든 사람에게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자유권 규약 <제2조 3호>**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종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 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 참여하고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 권리침해 시 법적 구제를 포함한 참여적 국가 기본법 제정
 - 거짓되고, 호도하는, 사이버과학에 근거한 관행의 해로운 결과로부터, 특히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채택
- **베네치아선언('09) <제14조 (d)목> <제15조 (a)목>**
 - 제3자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권, 기본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예방·배제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2/9)

국내적 기준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호시책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무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금지의무, 침해에 따른 삭제요청 등 권리구제절차 및 정부의 정보보호의무 규정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 의무
- **청소년보호법**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 친권자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의무
 - 여성가족부장관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규정

30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3/9)

현황 (1/2)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텔레그램 기반 'N번방' 사건 ▶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특성 ▶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해당 영상물의 확산 방지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
 - 부처 간 협업 및 정부·플랫폼 사업자 간 소통 등의 유기적 대응 필요
 -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이를 통한 범죄 예방 필요성 증대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SNS 발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증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범죄 대응 강화 필요
 -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추진 필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발의됨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윤영덕 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선우 의원 등 11인) 등 다양한 개정안 논의 필요

31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4/9)

현황 (2/2)

-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국민의 84.1%가 SNS를 이용 중, 응답자의 71.8%가 SNS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다고 답변
 - 비대면의 일상화로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증가
 - 특히 10대 청소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가장 높게 나타남
 - 인터넷의 양방향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온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안이 요구됨
-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규율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공지능위원회 규정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중(관련 발의안 총 8건)
 - 다만,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 간 균형을 달성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 매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중독 위험군을 발굴하고 중독 수준별·대상별 특화 치유서비스 지원 ▶ '21년 50,200명 치유 서비스 제공

32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5/9)

제3차 NAP 이행결과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내실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20. 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18. 4.-) 운영 및 '지역특화상담소(21. 7개소) 신규 운영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728,639건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grooming 처벌 조항 신설 및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화(21-)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 중 ▶ 법 시행 후 약 13개월 위장수사 총 201건 실시, 433명(구속30명) 검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우선제지원 실시(21-) ▶ (21) 46,682건 지원, (22) 48,719건 지원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 편집·합성물'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본인 및 직계 친족 등에서 대리인까지 확대(21)
 -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매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정 대응 중
 - '19년 11월부터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유관기관과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대응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청(원 정보 삭제 요청)을 실시
 - 5개 주요 글로벌 플랫폼(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년~'22년 6월까지 총 78,285건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중 85% 삭제
-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33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6/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적발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 의무 규정 신설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하도록 위장수사 제도 확대 추진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치단체 피해지원시스템과 연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 해외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글로벌 IT기업들과의 공조 확대
-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범죄예방교육·홍보 실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지원하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
 - 동남아시아 신생 사법협력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23)
 -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내 비준 준비('24) 및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 논의 적극 참여('24)

34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7/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2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엄중 처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률에 대한 적극적 법리해석을 통해 불법행위 적극 대응
- (삭제·차단) 수사 중 발견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 등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 지원
- (예방 활동)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누리집의 '사이버 공간 불법 유행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관계기관 협업)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신종 매체·기술 대응)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신종 범죄 대응
-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입법 지원 ▶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신종 범죄('23)

3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대상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온라인 혐오 표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26~'27)
-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 조장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시정 요구(계속)

35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8/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4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의원 발의 8개 법안에 대한 병합안의 입법 지원 추진('23-)
- 이용자 피해구제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국제 콘퍼런스 운영('23-)
 - 학계·전문가·시민단체·공공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이용자 권익 침해 위험을 검토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용자 정책 발전방안 논의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공조 ※ '19년부터 매년 12월 개최 중
- 이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연구 추진('23-)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의 합리적 적용 기준 및 기술적·관리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반 운영 등

36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9/9)

제4차 기본계획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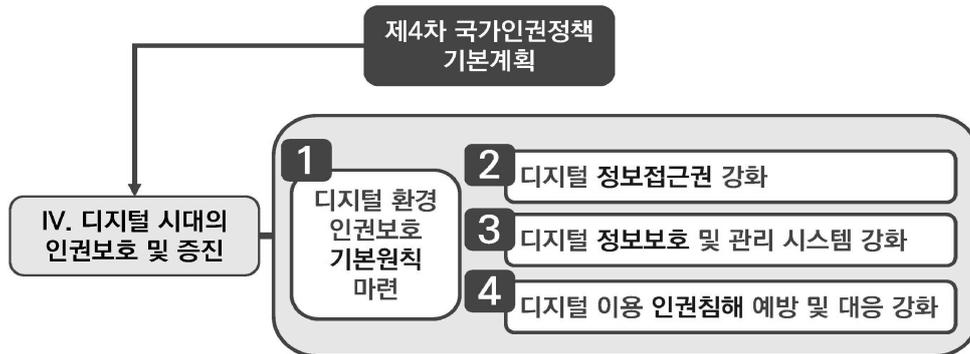
5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특정 학령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중독 전수진단
- 인터넷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수준별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공존질환을 보유한 인터넷중독 고위험 청소년에게 병원 치료비 지원
 - 공존질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외 기타 우울증, ADHD(주의력 결핍장애)등의 질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를 지속 확대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등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37

맺음말

- 디지털 심화 시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슈 검토
-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먼저 마련한 후,
- 디지털 사회,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3개 영역으로 제시함



Section

0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토론



-
- ① 디지털시대 인권 /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 ② 디지털시대 인권 / 이화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법학박사
 - ③ 기업과 인권 / 김민우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 ④ 기업과 인권 /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 디지털시대 인권 -

■ 최 문 정(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빠른 시기에 <제4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의 시의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구 고령화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분석과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분야의 사회과학자로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2023-2027)> 중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디지털시대 인권은 기존의 인권 담론과 어떻게 다른가?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은 국제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제적 기준에서 충분히 담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디지털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논의 가이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기존의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가?
- (2)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가?
- (3) 이러한 침해가 사회구성원 집단별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만 편중되거나 발생하는가?

2.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와 인권보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2023-2027)> 중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은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두번째 세션인 ‘디지털 정

보접근성 강화' 부분에 대해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 근간이 되는 국제적 기준은 『세계인권선언』으로 특히 사회적규약 제15조 제1호 (b)목인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 선언('09.)』 제16조 (a)목인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 도입 및 제도 수립' 및 제16조 (b)목인 '과학과 그 응용의 이익에 비차별적 접근 증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접근'의 사회문제만이 아니라, '활용 및 역량'과 이러한 격차로 인한 '이용성과'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2023-2027)>은 디지털 격차를 작은 범주인 1차 격차에 해당하는 '접근'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격차는 주로 디지털 기술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많은 저개발국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담론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 2차 격차인 '활용 및 역량'과 3차 격차인 '디지털 이용성과'에 대한 사회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아울러, 디지털격차의 사회문제에 대한 <제4차 기본계획> 과제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디지털기술만이 아닌 비(非)기술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룹의 사회집단은 디지털격차의 원인 및 메커니즘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집단이며, 정보취약계층 중에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배워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의 고령자가 폭우, 홍수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긴급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이 고령자에게 디지털 배움터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강화해도 취약계층 중에는 여전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집단에 필요한 것은 아날로그적 소통과 휴먼서비스입니다. 즉, 디지털격차에 대한 해결책은 디지털적 접근 외에도 아날로그적 접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디지털격차로 인한 인권보호 및 증진은 디지털의 프레임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디지털 스마트 복지와 인권보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2023-2027)〉 중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은 네 개의 섹션이 각각 ‘가. 국제적 기준’, ‘나. 국내적 기준’, ‘다. 현황’,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4차 기본계획 과제’는 현황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도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해온 정부사업 중심으로 과제가 기술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접근성 강화’에 대한 ‘제4차 기본계획 과제’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스마트 복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에의 적용은 정보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인권보호의 다차원적 측면과 연관된 이슈로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및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 복지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분석되는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향이 있고, 이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스마트 복지와 관련된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만이 아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시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사용자에게 배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플러그앤플레이, Plug and Play)’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디지털 시대에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만큼 이에 기술이 잘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및 정책 조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가 ‘제4차 기본계획 과제’에 포함되기를 기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토론문

이 희 옥(네이버 서비스 정책실, 법학박사(헌법전공))

안녕하십니까. 기술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장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디지털시대 변화의 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과 이를 학문적 통찰력을 통해 발표해주신 김명주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인권보장 법·정책의 헌법적 타당성 확충

첫 번째는 디지털환경에서 마련된 국가 인권정책 계획이 헌법상 기본권을 디지털시대 기본권으로 재발견, 재해석하는 관점에서 근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련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고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시해주신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본래적 자유와 존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회문화향유권, 예술과 과학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하고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까닭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속화된 변혁기에 국내 법·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명시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된다면, 준비된 법·정책이 헌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보호 기본원칙과 개별 기본계획 과제들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 헌법상의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제10조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나오며 적극적인 권리로서 31조 이하 사회권에 근거

1) 본 토론문의 내용은 토론자의 소속회사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보호영역과 가치를 발견하고 재해석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배경과 무관하게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실제 직업환경에서도 보다 수평적,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가상환경과 인공지능, 신기술이 뒷받침할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되고 그 보호영역을 발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 및 향상된 HMD 기기의 지원으로 개인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에서는 일반적 행동권, 개별적 기본권의 행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시대의 질적 변화를 인식한 지금에 와서 개인의 자유권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인 디지털 환경에서 개별적 기본권으로 확장,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계획도 이에 따라 대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네치아선언」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도 우리 헌법의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자국민의 권리보호 및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구현으로 디지털시대 인권정책에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진흥법이나 특례법 등 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법안의 ‘공정성’의 가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디지털시대 주권에 대한 물음

두 번째는 디지털시대 주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 주도의 윤리 기본원칙들의 성격과 정책의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디지털시대 주권의 개념과 주체와 관련한 의미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ICT 성장과 빅데이터 환경에 놓이면서 언젠가부터 ‘정보주권’,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은 객관적 의미에서는 영토 내 배타적 지배권 또는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 변형되어 온 개념이라, 그와 같은 용어가 부적절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제1조에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기에 기술시대의 주권도 규범적 요청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용어가 다소 기술주도 사회에서 국가적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목적에 따라 때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인이 디지털환경에서



피동적인 주체에서 적극적인 주체로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디지털환경의 주권’이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입법과 정책의 방향

최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기준과 윤리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시행된 EU의 GDPR 등의 국외 입법 상황 및 인공지능의 붐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의 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가 차원에서 규범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에도 나침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시된 원칙의 규범적 성격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에게 규제책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선도하는 기본계획은 국제적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정책으로서 도출되는 장점도 있지만, 기업이 주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해당 시장 환경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소 급하게 준비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EU의 규제법이 국가적 기본계획 과제에 적용되는 점에 우려가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규율은 국내 디지털 시장환경이 일정 부분 성숙할 때 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수범자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업 및 이용자 파트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충분한 사전 이해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기술의 질적 변화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만큼 시장은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이해당사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수범자로 인식되었던 기업은 플랫폼 환경 조성자로서 존재하며, 보호의 대상이거나 수동적 지위에서의 이용자가 수익자나 생산자의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 또는 규제 정책에서도 기존과 다른 질적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변화는 디지털정보접근권 강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권리로서 디지털 활용권이 디지털 매움터와 맞춤형, 방문 교육의 실시, 가상 국립도서관이 구축, 해상 원격의료 및 교통정보의 음성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야말로 후견자적 지위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정책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기술이 미치지 못하고, 혹은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마련된 제4차 기본계획이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업과 인권 토론문 : 인권실사의 현실적 필요성과 중요성

■ 김민우(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사)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장)

향후 4년간 국가인권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기업과 인권』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며 앞으로 다가올 4년 동안 우리 사회와 기업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과 인권의 국제적인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NAP의 향방에 따라 국제 지속가능성원칙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역량과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토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인권실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하 UNGPs)이 기업과 인권의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규범이 되어 온 원동력은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및 이행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국제규범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인권정책 수립 및 수정의 기본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1년 UNGPs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논의는 인권실사의 효과적인 실질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 법제화도 이런 흐름 속에서 오랜 논의 끝에 도출된 국제사회의 하나의 현실적 합의점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실사 법제화에 대비한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필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인권실사를 포함하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사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

만 이후 공공분야에서 기대했던 인권실사의 낙수효과가 민간기업 부문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채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태국(2019년)과 일본(2022년)은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업과 인권 NAP에 공급망 인권실사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입법화된 유럽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과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이하 EU실사법)』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을 볼 때 다가오는 제4차 NAP에서는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현행처럼 NAP 내의 한 장(chapter)이라는 형태로 기업과 인권 계획의 틀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실사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인권실사의 국제동향

국제사회는 2011년 UNGPs 발표 이후 자발적 준수기반의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한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처럼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간 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규범이 제시되었으나 각 산업과 비즈니스별 특성을 감안 할 때 모든 사안을 다 지표화하거나 정책화할 수 없고 개별 기업의 복잡한 활동을 정부기관이 일일이 다 관리감독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가장 실효성 높은 현실적 대안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권실사의 법제적 프레임워크화라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EU 및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사법에 명시된 두 가지 실사이행 핵심분야인 인권과 환경에서 의미하는 인권의 개념은 흔히 언급되는 ESG 사회(Social)부문의 한 가지 개별세부지표로서의 범주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활동이 최소한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있는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필수 이행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실사 법제화는 공급망을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이행 프로세스와 결과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환경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실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정보와 정책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EU실사법과 인권실사의 현실적 대응 필요성

ESG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금융분야를 포함하는 EU실사법이 EU의회를 통과하면서 인권실사에 대한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의 특성상 EU실사법이 현재 안 대로 실제 법제화될 시 예견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SG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면서 최근 들어 국내기업들도 인권실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EU실사법 법제화 시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추진할 실사법의 주요 조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독일공급망실사법(2021년)을 면밀히 살펴보면 향후 다가올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EU실사법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입법화된다면 각 회원국에게 인권실사의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 EU역내에서 활동하는 해당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이행의무 부과
- 회원국별 국내 법제화를 통한 관리감독기구 설치와 불이행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 및 공공조달배제
- EU차원의 관리감독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회원국의 법제화 및 이행 감독

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사의무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EU차원에서 기업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원칙과 이행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는 통합적인 실사이행정책 패키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체계적 준비와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및 지원방안 필요

향후 실사 제도화가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면 이 부분을 기업만의 책임이나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인권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실사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계획수립 시 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적 적용 방안과 교육 및 상담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사대응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의 전문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객관적인 인권정책 역량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제4차 NAP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과 인권분야에 중요한 시점에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면 향후 실사법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정책수립 및 입법추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인권 토론문*

■ 김 동 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 (기업과 인권 부분과 관련된) 본 NAP 공청회 및 NAP 과정에 대한 질문

가. 공청회의 형식(발제와 토론)에 대한 의문

먼저 제2차 NAP 공청회(2012. 3. 14.)에 대한 비판 한 가지를 환기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도 제2차 NAP 공청회의 형식과 유사하게 외부 발제/토론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경위가 궁금하다.

“형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NAP작성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발제를 맡지 않음으로써 NAP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발제자가 1차 평가를 하고 토론자가 발제자의 평가를 2차 평가하는 다소 상식을 벗어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²⁾

나. 인권옹호단체 및 취약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UN에서 발간한 NAP작성 핸드북³⁾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다.

“NAP 수립 절차는 결과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의견수렴이고(consultation), 특히 시민사회에게 중심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provide central role for civil society) (13면).”

“[이 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인권단체(human rights NGO)가 NAP의 계획과 실행에 중심으로 관여하는 것이 기대된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1) 본 토론문의 일부 부분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WATCH)의 내부논의를 반영하고 있음.

2)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아쉬운 점 많아”, https://kocun.org/story_advocacy/?q=YToz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E6ImtleXZvcmluO3M6NTM6IuqysO2YvOydtOyJvOyXrOyEsSDmlITsp4Ag7IKs7KCE6rWQ7Jyh7ZSE66Gc6re4656o7J2EIJtzOjE6ImBhZ2UiO2k6MTt9&bmode=view&idx=12290645&t=board

3)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training10en.pdf>

대해서는 NGO와 풀뿌리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의 참여가 강조된다(52면 이하).”

또한 이번 UPR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NAP 참여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본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의 대부분은 연구자와 변호사이다. 이전의 공청회(2022. 11. 9. 개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NAP의 작성과 실행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다. NAP의 초안은 언제 공개되고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이미 NAP 수립이 매우 늦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초안을 속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토론자가 전달받은 초안도 ‘대외비’ 표기가 되어 있으며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왜 NAP 초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언제 공개될 예정인지 궁금하다.

라. 이번 정부의 NAP 수립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법무부는 NAP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정부 교체기에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인권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⁴⁾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NAP의 수립 방향과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위의 권고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적어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NAP의 기초와 주요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위 NAP 권고 중 어떠한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다(예컨대 인권위가 제안한 100개의 핵심과제 중 수용/불수용/부분수용 등은 공청회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4)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czODk3JTJGYXJ0Y2xWaWV3LmRvJTNG>



2. 기업과 인권 부분에 대한 평가

가. 총평

- 과제별로 서술의 밀도에서 큰 격차가 발견된다. 즉, 어떠한 정책과제는 구체적인데 비해 어떠한 정책과제는 매우 모호하다. 예컨대, 어떤 정책과제는 법안과 정책의 구체적 내용까지 소개하는데 비하여(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소비자 보호영역,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어떤 정책과제에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소개도 없다(인권정책기본법안). 모든 계획과 정책과제들의 추상/구체화와 서술의 밀도가 동일할 수는 없겠으나 그 편차가 너무 크다. 적어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구체화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정렬시킬 필요가 있다.
- 기업과 인권의 최근 동향은 기후와 인권실사이다. 예컨대, 2023년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기후와 실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도 기후문제와 인권실사를 반영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초안에서는 기후문제나 인권실사의 제도화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나. 세부 과제별 평가

(1) 개발협력사업 참여기관의 인권준중 책임 강화

- 개발협력사업 부분의 NAP 초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편중’이다. 즉, NAP의 이행과 계획이 무상원조(KOIC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3차 NAP의 이행점검도 무상원조기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4차 NAP에서는 유상원조(기재부, EDCF, 수출입은행) 등이 대상부처 및 기관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 이 부분은 표제부터 어색한 측면이 있다. 세부 내용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인권경영 제도화를 연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전 NAP부터 정부가 자신의 정책과제로 삼

은 것이다. 기업과 인권의 전체 장의 내용 대부분 각각에 그와 관련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에만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색하다.

- 이 부분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인권실사이다. 따라서 인권실사라는 내용을 표제에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온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인권실사를 제도화할 것인가? 의무적으로 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할 것인가? EU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의무적 인권실사의 제도화 흐름이 있는 만큼, 정부(법무부)는 NAP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정책기본법안 추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초안은 법안의 '논의'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의미도 불분명하다.

(3) 공정임금 체계 확립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가입국중 가장 성별임금차이가 크다. 가령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 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800원을 받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근로, 퇴직단계에서 채용 합격자, 승진, 육아휴직 사용자,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제3차 양성평 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여전히 여성노동자 현황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자료를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상 보수총액자료로 제출하도록 바꿔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 자료에는 관리자 직급 정보가 포함되어 않아 고용의 질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제도들은 공공기관, 일정규모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들이 집중돼 있는 소규모 기업, 임시직·비정규직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AA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진 제도라는 점에서도 한계적이다. 임금차별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격차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제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노동성차별 개선으로 이어질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제1차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제2차 시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 지속가능경영의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여러 법령상 수립 및 시행되고 있는 시책, 전략, 기본계획 등(예컨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에서 인권경영의 제도화의 가치와 내용을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 조달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 조달은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한 분야이다. 따라서 보다 과제의 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초안의 내용은 너무 부실하다.
- “해당 기업에 가점 지속 부여”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지속 확대”라고 하는 문구도 정확히 무엇을 구체적으로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문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6)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 초안은 일종의 자율규제나 유도행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근로조건 자율개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홍보사업 등). 아동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초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의 정책이 과제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 특히 특성화고 학생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장실습제도는 실습 기업의 안전보건감독을 일정 기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감독이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실습생들의 직장 내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 또한 업무 및 실습의 형태나 형식과 관계 없이 청소년(학생)이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권과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 때 18세 이상이지만, 업무의 성격 상 아동의 연장선상에 놓인(실습생 등) 후기 청소년 역시 보호에서 않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실습 등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일하기 전에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 유해요인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점은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노동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동법, 노동 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7)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인권 보호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에 대한 논의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언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8)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2019년 12월에 한국정부로서는 최초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라는 틀 속에서 동남아 지역에 한정하여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속에서 세워진 대책으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한계였지만 적어도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

례들을 파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 문제는 이 역할을 맡은 유관기관 협의회가 2020년에 두 차례의 회의가 열린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사례가 있었다는 정보공유 외에 구체적으로 역할이 법률에 근거하여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관기관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처음부터 현지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보다 한국 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국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대부분의 대책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립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신남방정책이 지속되지 못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틀에서 수립된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차원의 대책도 폐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한국정부가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포럼과 세미나를 열고, 노무관리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하고, 기존의 유관기관 협의회를 상설·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피해 조사조사기관의 사전검토 단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검토 단계, 피해구제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지연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요구로 피해구제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정이안이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나 필요한 치료를 충족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지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공식사과, 포괄적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에 대한 적극적 이행, 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등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제3차 NAP에서도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제는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안에서도 구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원회 운영 효율화”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인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0)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정부 기반 구제의 핵심 기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이다. NCP를 통한 구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NCP의 제도적 특성상 NCP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NCP의 위원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는 NCP의 설립 근거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단체, 노동자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공식 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문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성의 강화는 NCP의 동료평가의 권고이기도 하였다. 한국NCP에 대한 OECD 동료평가에서 역시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지적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을 구조와 운영에 통합시키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NCP는 제3차 NAP에서 동료평가를 통해서 선진국의 NCP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동료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 실질은 불수용에 가깝다. 동료평가가 공개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NCP운영에 참여시키기는커녕,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소통도 가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모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최근 개정되었고, 이 개정사항에는 NCP절차에 대한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NCP로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그 구조와 운영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초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른 NCP 절차의 개선이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5 evenly spac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제4차('2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주 최 | 법무부 인권정책과

| 편집·인쇄 | 동광문화사 ☎ 02) 503-5165
